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과
양귀비 재배 실태

The poppies planting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cultivating status of the poppies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노석주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과
양귀비 재배 실태

지도교수 허영란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노석주

盧錫主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전호태



審査委員 양상현



審査委員 허영란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목 차》

1. 머리말	1
2. 1910~1920년대 양귀비 재배 허가와 통제	5
1)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양귀비 재배 성행	5
2)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과 양귀비 재배 구역 재편	8
3) 양귀비 재배 구역 축소와 유지	15
3. 1930~1940년대 양귀비 재배 확대	26
1) 함경도에서의 양귀비 재배 면적 확대와 아편 수출	26
2) 중일전쟁과 양귀비 재배 구역 확장	31
4. 맺음말	37
《참고문헌》	39
《부록》	41
ABSTRACT	53

《표 목 차》

<표 1>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 조건	9
<표 2> 연도별·민족별 양귀비 재배자 현황	11
<표 3> 1920년 경기도 양귀비 재배 면적	13
<표 4> 1921년 지역별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 인원	14
<표 5> 연도별 양귀비 지정 재배 면적 및 실제 재배 면적	16
<표 6>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양귀비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비교	20
<표 7> 1921~1930년간의 각 전매품의 세입	21
<표 8> 연도별 함경도, 기타지역과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 비교	27
<표 9> 1937년 이후 양귀비 재배 지역 목록	32
<표 10> 1938~1939년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아편 납부 인원	34
<표 11> 1940~1944년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 및 수출량	36

《그 립 목 차》

<그림 1> 1920년, 1929년 양귀비 재배 구역 비교	15
<그림 2> 연도별 함경도 및 기타지역에서의 아편 성적	28

《부 록 목 차》

<부록 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따른 양귀비 재배 허가 구역 목록 ..	41
<부록 2> 「양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1917.03.31.)	44
<부록 3> 「양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1918.06.05.)	44
<부록 4>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1919.06.15.)	45
<부록 5> 「조선아편취체령시행규칙(朝鮮阿片取締令施行規則)」(1919.06.15.)	47
<부록 6> 1936년 아편 사무 담당 당국	51

국 문 요 약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과 양귀비 재배 실태

노석주

양귀비는 아편류 마약의 원료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를 재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문헌자료를 확인해보면 적어도 조선 초기부터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귀비는 보통 약재 확보나 관상을 위해 재배되었다. 조선 정부의 주도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개항기부터 아편 흡연 문화가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흡연용 아편 확보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조선 정부는 아편 중독 확산을 우려해 양귀비 재배 행위를 금지했다.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도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아편 관련 범죄와 함께 양귀비 재배 행위를 단속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유럽 전선에서의 아편류 마약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아편류 마약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가격도 급등했다. 필요한 아편류 마약을 해외 수입으로 의존해온 일제는 아편류 마약 자급을 절감(切感)했다. 그 과정에서 아편류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지로 식민지 조선이 지정되었다. 식민지 조선은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앵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을 제정했다. 해당 규칙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경찰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약업 종사자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앵속재배취체규칙」은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유출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달리 약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양귀비가 재배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시 아편 가격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보다 고가였는데 양귀비를 재배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 조문에 대한 오해와 양귀비 재배를 둘러싼 각종 소문 등에 의해 무허가 양귀비 재배자가 증가했다. 경찰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의한 양귀비 재배 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양귀비 재배 성행 현상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같은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양귀비가 재배되지 않자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1919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이 고시되었다. 「조선아편취체령」은 이전의 「앵속재배취체규칙」을 보완했는데,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 조건과 재배 신청자 조건, 생산 아편 납부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두었다. 같은 해 8월 2일에 「앵속재배구역(罌粟栽培區域)」이 고시되어 경기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황해도, 강원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양귀비 재배 구역은 여러 번 변경되는데, 1931년에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만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남았다.

양귀비 재배 구역이 식민지 조선 중·북부지역으로 한정된 이유는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인한 아편 가격 하락, 양귀비 재배 및 아편 제조 기술의 부족, 아편류 마약 단속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양귀비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식민지 조선 남부지역의 양귀비 재배지는 폐경에 이르렀다. 보통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함경도에서는 빈민과 화전민 구제 목적으로 함경도 당국에서 이들에게 양귀비 재배

를 허가해줬다. 그래서 함경도는 1920년대 동안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유지되었다.

1930년대에 만주사변과 함께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재배 규모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은 만주국뿐만 아니라 대만, 관동주로 수출되어 해당 지역의 아편 전매에 사용되었다. 1920년대 동안 양귀비 재배지로 남았던 함경도를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함경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1,000정보를 넘지 못했으나 1935년에 이르면 재배 면적은 2배 이상 증가해 2,000정보를 넘어섰다. 아편 수납량도 양귀비 재배 면적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의 최대 수납량은 약 1,500kg이었지만 1935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때 함경도의 아편 생산량은 식민지 조선 전체 아편 생산량에 가까웠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제는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했다. 전쟁으로 인한 전선 확대는 아편류 마약 수요 증가를 불러왔다. 일제는 침략을 통해 새로운 중국 영토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아편류 마약 중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아편류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로 아편 전매를 시행하여 아편 유출 통제와 전비 확보를 하고자 했다. 이러한 외부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구역과 면적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39년에는 충청북도와 평안북도를 제외한 식민지 조선 전 지역이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은 대부분 전선으로 공급되거나 대만, 관동주, 만주국으로 수출되었다. 비록 자연재해와 양귀비 재배 미숙련 문제로 조선총독부가 기대한 만큼의 아편이 생산되지 않았지만, 양귀비는 해방 직전까지 계속 재배되었다.

한편 양귀비 재배 구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양귀비 밀재배와 아편 밀거래와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보통 양귀비는 산림지대에 밀재배되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아편은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경찰 당국의 검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계속 일어났다. 산림지대 특성상 내부의 양귀비 밀재배지를 검거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아편 밀거래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벌금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귀비는 계속 밀재배되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은 그들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귀비 재배 미숙련 문제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편 가격 하락 문제 등으로 아편 수납량은 조선총독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정된 재배 구역에서만 양귀비를 재배하도록 허가해 아편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경찰 당국의 감시 범위 밖에서는 양귀비가 여전히 밀재배되었다. 또한 양귀비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외부로 유출되어 아편 중독자들을 낳았다.

주요어 : 양귀비, 양귀비 재배, 양귀비 재배 실태, 양속재배취체규칙, 조선아편취체령, 전매, 아편류 마약, 양귀비 밀재배

1. 머리말

아편류 마약은 신체에 진통, 진정 효과를 내는 물질로 의약용으로 이용되지만, 남용(濫用)하면 중독에 이른다. 아편류 마약 중독자(이하 중독자)들은 중독으로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아편을 구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는 예도 있었다. 중독자들에게 아편류 마약 투여를 중지시키면 고통스러운 금단증상(禁斷症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중독자는 아편류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아편류 마약은 국가적 통제 대상이 되었다. 통제 방법으로는 양귀비 재배나 아편류 마약 제조 통제, 중독자 치료, 밀매 단속 등이 있다. 양귀비 재배를 예로 들면, 아편류 마약의 원료이기 때문에 재배 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귀비는 아편류 마약뿐만 아니라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므로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기도 하다. 또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면 완전한 재배 금지는 어렵다. 보통작물을 재배하기 곤란한 지역이더라도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고, 중독자의 수요가 있기에 밀재배자(密栽培者)는 아편 판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양귀비 재배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귀비가 국가의 감시망 밖에서 은밀히 재배되는 원인이었다.¹⁾

한반도에서도 양귀비가 재배되었다. 양귀비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 알 수 없지만,²⁾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같은 문헌에 양귀비가 약재로 쓰인다고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양귀비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헌에서 양귀비가 언급된다. 왕실 기록물과 의학서에서는 양귀비가 약재로 이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산림경제(山林經濟)』³⁾나 『화암수록(花庵隨錄)』⁴⁾과 같은 백과사전류의 문헌을 보면, 각각 양귀비가 식용과 관상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인들의 문집에서도 양귀비가 자주 언급되었다.⁵⁾ 이처럼 조선시

- 1) 양귀비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양귀비의 원산지는 남유럽으로 고온의 기후에서 잘 자란다. 또한 내한성(耐寒性)이 높아 한랭한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충분한 일조량과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라는 환경만 갖춰지면 양귀비 재배는 어렵지 않다. 황무지나 산림지대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31쪽. ; 마틴부스·오희섭 역, 『아편,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수막새, 2004, 17 ~ 18쪽. ;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https://www.kbr.go.kr>)).
- 2) 발굴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에 블로치가 유적이 양귀비 씨앗이 발굴되었다(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연해주 블로치가 유적』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3) “소자유(蘇子由 자유는 송나라 소철(蘇轍)의 자)가 영천(潁川)에서 살 때 집이 가난하였는데, 매양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환절기에 배추와 겨자가 잘 안 되었으면 앵숙각과 결명(決明)을 심어 부족을 보충했는데 이는 청량(淸涼)한 맛을 취한 것이다(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4) “9품[강조는 필자] 옥잠화, 불등화, 연교화, 초국화, 석죽화, 앵숙각[밀줄은 필자], 봉선화, 계관화, 무궁화(강희안·이병훈 역,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2000, 167쪽.)”
- 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DB, 한의학교전DB를 이용해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행연도 미상 서적과 중국에서 제작된 서적은 제외했다. 왕실기록물 6건 (『世宗實錄地理志』, 『成宗實錄』, 『日省錄』, 『萬機要覽』, 『六典條例』, 『承政院日記』). 의학서 12건(『鄕藥濟生集成方』, 『鄕藥採取月令』,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 『及幼方』, 『廣濟秘笈』, 『醫鑑刪定要訣』, 『依源學綱』, 『丹谷經驗方』, 『四醫經驗方』). 문집류 28건(『四佳集』, 『默齋日記』, 『四留齋集』, 『惺所覆瓿藁』, 『敬亭集』, 『四留齋集』, 『葵亭集』, 『息山集』, 『寓庵集』, 『潭庭遺藁』, 『小松遺稿』, 『東樊集』, 『斗室存稿』, 『冠巖全書』, 『旅菴遺稿』, 『俛宇集』, 『燕巖集』, 『玉垂集』, 『餘窩集』, 『存齋集』, 『洛下生集』, 『貞蕤閣集』, 『謙齋集』, 『西溪集』, 『星湖僿說』, 『燕輶直指』, 『與猶堂全書』, 『梅泉集』). 백과사전류 3건 (『花庵隨錄』, 『山林經濟』, 『林園經濟志』).

대에 양귀비는 약용, 식용,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

개항기에 이르면 조선 사회에 아편 흡연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아편 중독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조선 정부는 아편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했다.⁶⁾ 양귀비 또한 통제 대상이 되어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재배자는 처벌했다.⁷⁾ 일제시기도 아편 중독 확산을 우려한 조선총독부가 양귀비 재배를 금지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외부 상황으로 아편 자급이 필요 하자 총독부가 허가한 구역에서 양귀비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양귀비는 해방 후 미군정이 「마약의 취체」를 선포할 때까지 계속 재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귀비 재배는 불법 행위로 간주 되어⁸⁾ 범죄 현장이나 연구소가 아니면 보기 어렵다.⁹⁾

양귀비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 때문인지, 양귀비 재배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선행연구를 보면 조경학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 화원에 심어졌던 지피식물(地被植物)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각 지피식물의 등장 빈도나 상징성에 대해 밝혔는데 이때 양귀비도 소개되었다. 양귀비가 어떠한 문헌에 등장하는지 참고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학자 임병윤은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을 정리하고, 당시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전매 세입에서 아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것을 보고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이 조선인들을 의도적으로 중독시켜 식민통치를 수월하게 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뒀다.¹⁰⁾

역사학계의 일제시기 마약사 연구에서도 양귀비 재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연구는 아편 중독의 확산 배경과 각 주체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양귀비 재배는 당시 아편 중독 확산의 근거로 언급하는 정도다. 박강의 경우, 일제의 아편 정책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할에 관해 연구했다. 일제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식민지 조선이 아편 생산·공급자가 되는 과정을 밝히며, 식민지 조선에서 아편류 마약 중독 문제가 심화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는 일제시기 전체에 걸쳐 시기별 아편 정책을 다뤘다.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구역이나 일제의 아편 수급 계획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일제시기 전체의 아편 정책을 다루다 보니 양귀비 재배에 관한 재배 정책 및 규모의 변화, 당시 주민들의 인식과 관련해

6) 조선 정부는 아편전쟁 이전에 역관을 통해 청나라의 아편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憲宗實錄』 7권, 헌종 6년(1840년) 3월 25일 을묘).

7) “단속을 어기고 아편 연초를 개인적으로 심은 자는 해당 토지 전부를 관부(官府)로 귀속시킨다(「法務衙門鴉片烟禁戒條例」(1894.10.01.))”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08.17.)

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에 양귀비가 있다고 한다(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 <https://snuherb.snu.ac.kr/>). 한편, 2011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양귀비 재배 단속을 위해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식별 자료집』을 발간해 각 지역의 수사기관에 배포했다. 그러나 마약 단속 특징 상, 일반에게 해당자료집은 비공개다(「인터넷..양귀비 관상용.규제종 구분 자료집 발간」, 『과이낸셜뉴스』, 2011.06.19.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또한 기록에서도 과거 양귀비 재배 등에 관한 사실을 찾기 어렵다. 일제시기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던 경상남도 함천군은 1920년부터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21년과 1931년, 1932년에 양귀비가 재배되었으나 『陝川郡史』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함천군, 『陝川郡史』 1, 함천군, 2013(인터넷판)). 단,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지(地谷面誌)에 ‘진시동원체제기인 1940년대에 하얀 양귀비가 재배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地谷面, 『地谷面誌』, 2008, 748쪽.).

10) 임병윤, 「朝鮮總督府의 아편정책을 폭로한다 : 阿片과 植民地經營 下」, 『민족지성』, 민족지성사, 1988.

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다.¹¹⁾

이후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당시 아편류 마약을 주제로 연구한 조석연과 임예지도 양귀비 재배 구역에 대해 언급했다. 조석연은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마약 문제의 배경과 사회적 인식, 관련 정책을 다뤘다. 양귀비 재배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문헌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제한 없이 약재 확보 목적으로 재배되어 온 양귀비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¹²⁾ 또한 일제시기의 양귀비 재배에 관해서는 1919년에 고시된 「앵속재배구역(罌粟栽培區域)」과 1920년의 「앵속재배구역추가(罌粟栽培區域追加)」, 1930년대의 아편 수납량 및 매출액을 다루며 식민지 조선이 아편 생산 및 공급지로 전락한 배경을 다뤘다. 그러나 일제시기 전체에 걸쳐 이뤄진 양귀비 재배 구역에 관한 사항과 양귀비에 대한 당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임예지의 경우, 1912년의 「헤이그 아편 협약」과 식민지 조선의 아편 정책을 비교하면서 1919년과 1920년의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에 대해 다뤘다. 그는 일제가 아편 거래 및 생산 등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헤이그 아편 협약」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의 아편 정책은 재정확보에 있었으며 그 배경으로 양귀비 재배 구역을 지정 및 추가를 지적했다.¹³⁾ 당시 국제적인 아편 감소 움직임과 연결 지어 조선총독부의 모순된 아편 정책을 비판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그 근거로 든 양귀비 재배 구역과 관련해서는 조석연과 마찬가지로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1917년과 1918년의 「앵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과 1920년 「앵속재배구역추가」 이후 1920년대 동안 이뤄졌던 세 차례의 양귀비 재배 구역 변동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 전매국으로부터 양귀비 재배를 의뢰받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농장에서 양귀비 재배 실태를 다뤘다. 양귀비 재배는 병충해나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로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¹⁴⁾ 부족한 사료를 이용해 동양척식주식회사 관할 양귀비 재배지에 대해 다뤘으나,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그 이전의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¹⁵⁾ 일제시기의 조선에서 시행된 양귀비 재배 정책과 그 배경, 재배 구역의 변화와 실태, 당시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다른 당시 양귀비 재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마약사 연구의 범위 확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을 밝히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앵속재배취체규칙」과 「조선아편취체령」, 「앵속재배구역」과 같은 법령을 활용했다. 이 법령들은 양귀비 재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과 연도별 양귀비 재배 구역을 담고 있다. 또한 아편 사무를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발간한 『조선전매사(朝鮮專賣史)』第3卷(제3권)과 『조선총독부전매연보(朝鮮總督府專賣年報)』가 있다. 해당 사료들은 다른 사료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 본고에서 활용 빈도가 높다고 볼

11)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12) 조석연, 「한국 근현대 마약문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3) 임예지, 「1910·20년대 조선총독부 아편정책과 성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4) 樋口雄一, 『植民地支配下の朝鮮農民』, 社會評論社, 2020.

15) 이는 일제의 아편 정책·유통·중독문제·양귀비 재배에 관해 연구한 구라하시 마사나오(創橋正直)가 지적했던 문제였다(구라하시 마사나오·박강 역, 『아편 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수 있다. 『조선전매사』 제3권은 아편의 연혁, 법령, 양귀비 재배 구역과 재배 면적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전매사』 제3권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 이유, 양귀비 재배 구역 선정·재배 지원자 자격·재배지 지정에 대한 부가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전매연보』는 전매국에서 각 전매 품목에 대한 연도별 성적을 통계로 정리한 자료다. 아편이 당시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양귀비 재배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민족별 재배 인원과 면적, 아편 수확량, 배상금, 모르핀 함량, 몰수 아편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편이 전매국 담당이 아니었던 1925년에서 1928년 사이의 통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39년까지 통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1940년대의 양귀비 재배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히, 시기가 지날수록 통계 항목이 간략해지는 단점이 있어 관찬 사료 외에 당시 신문 기사와 단행본을 활용했다.

본고에서 참고한 신문 기사는 당시 주요한 언론지였던 『매일신보(每日新報)』를 비롯하여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이며, 『부산일보(釜山日報)』와 같은 지역신문도 활용했다. 신문 기사에는 당시 일반인들의 양귀비 재배 열풍과 밀재배 현장과 같은 관찬 사료에서 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단행본의 경우, 양귀비의 품종과 재배법, 유액 채취법이 기재된 백과사전류를 참고했다. 단행본은 관찬 사료와 신문 기사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양귀비의 생태나 재배법, 일본의 양귀비 재배 성적을 담고 있다. 특히 1943년에 간행된 사토 히로시(佐藤弘)의 『대동아의 특수자원(大東亞の特殊資源)』에는 일제 영역 내에서 양귀비 재배 및 아편 생산 상황과 외국의 사례도 언급하고 있고, 전시동원체제기 동안 일제의 아편 공급 계획도 확인할 수 있어 사료가 부족한 1940년대의 상황을 보충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 규모가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본문을 구성했다. 2장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을 검토한다. 2장 1절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그로 인한 아편 가격 급등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재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2장 2절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양귀비 재배를 통제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을 살펴본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아편취체령」에 따라 「앵속재배구역」을 고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2장 3절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인한 아편 가격 하락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과 그 원인을 함께 설명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이 감소하는 와중에 함경도의 양귀비 재배 구역은 여전히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면적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함경도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함경도에 양귀비가 계속 재배되면서 발생하게 된 정책의 한계를 함께 보려 한다.

3장은 1930년대 중반기에 접어든 시기, 함경도에 양귀비 재배 면적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며, 그에 대한 원인과 생산된 아편의 유통 과정을 확인한다. 3장 2절에서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본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군수물자인 아편 및 모르핀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양귀비 재배 구역 및 면적이 확장되었다. 확장 배경과 당시 양귀비가 어떠한 지역에서 재배되었는지 확인하며 그 과정에 존재한 한계를 파악한다.

2. 1910~1920년대 양귀비 재배 허가와 통제

1)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양귀비 재배 성행

양귀비가 흡연용 아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된 시기는 개항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아편전쟁을 통해 아편 중독이 국가 운영에 해(害)를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귀비 재배를 허가하지 않았다.¹⁶⁾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도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아편 흡연을 엄금하고, 조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양귀비 재배 행위를 단속했다.¹⁷⁾ 하지만 아편은 마약뿐만 아니라 진통제나 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었고, 아편류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었다.¹⁸⁾ 또한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 효과로 인해 전쟁터에서 부상병의 고통을 더는 데 탁월했다. 따라서 필요한 아편은 양귀비 주산지(主產地)였던 이란, 인도, 터키와 같은 해외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제는 아편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 전선에서의 아편류 마약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아편을 수입할 선박도 부족했다. 그 결과 아편류 마약의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도 급격히 증가했다. 해외에서 아편류 마약을 수입해왔던 일제는 아편 자급을 절감(切感)했다. 아편 자급을 위해서라면,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지부터 선정해야 했다. 물론 일본 본토에서도 양귀비가 재배되어 양질의 아편이 생산되었으나 높은 인건비와 보리, 콩의 가격 상승으로¹⁹⁾ 양귀비 재배 구역을 확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제는 일본 본토 밖에서 양귀비 재배지를 선정해야 했다. 일제 내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새로운 양귀비 재배지로 적합했다. 식민지 조선은 양귀비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었으며, 인건비도 저렴했다. 여기에 재배 기술과 유액 채취법을 개량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모르핀 함량 10%에 달하는 양호한 품질의 아편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²⁰⁾

한편, 식민지 조선 내부 상황도 양귀비가 재배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원래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를 허가해주지 않았으나, 급등한 아편 가격을 노리고 양귀비를 산림지대나 국경지대 등지에서 밀재배하는 자들이 있었다.²¹⁾ 이처럼 양귀비 밀

16) “중국에 들어온 서양 사람이 사교(邪敎)를 퍼뜨려 인심이 빠져들고, 아편(鴉片)을 몰래 가져와 몸과 목숨을 상해하는데, 그 해독을 입은 어리석은 백성이 처음에는 남의 유혹을 받고 이어서 사설(邪說)에 몰들어 심하면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생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러도 뉘우쳐 고칠 줄 모르므로, 황제가 진노하여 여러 번 유지(諭旨)를 내려 엄히 금지하였습니다(『憲宗實錄』 7권, 현종 6년(1840년) 3월 25일 을묘).” ; 「鴉片煙禁戒條例」, 1894.10.01.

17) “아편 밀수 및 아편연의 꺾연은 조선 개발에 심한 장애가 되니 가차없이 검거하여 폐풍을 일소하라(「朝鮮總督府訓令」 第51號, 『朝鮮總督府官報』, 1914.09.21.)” 해당 『朝鮮總督府官報』에는 양귀비 재배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귀비 밀재배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했다(「崔巡查補의 清廉明敏, 崔순사보의 청렴한 마음, 돈 주는 것을 아니 먹었어」, 『每日新報』, 1914.05.06.).

18) 아편류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아편류 마약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금단증세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류 마약 중독자 치료소에서는 중독자에게 아편류 마약을 조금씩 투여하면서 치료를 병행한다(「法律이 公許한 阿片中毒者 治療所」, 『別乾坤』 67, 1933.11.01, 23~25쪽.).

19) 일본 본토에서 양귀비는 보통 벼의 이작(裏作)으로 재배되었다. 보리와 콩도 벼의 이작으로 재배되었기 때문에 보리와 콩의 가격이 상승하면 양귀비 재배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31쪽.).

20)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42~43쪽.

21) 「罌粟을 비밀재배, 두 지나인의 흥계」, 『每日新報』, 1916.07.12. ; 「아편을 음제, 양귀비밭을

재배자가 증가하면 아편이 조선 사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무분별한 양귀비 밀재배 방지와 함께 아편의 안정적인 자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황해도와 충청북도, 평안남도에 경무부령으로 「앵속재배취체규칙」을 고시하여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8년에는 함경북도, 전라남도, 평안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에 「앵속재배취체규칙」이 고시되었다.²²⁾ 물론 「앵속재배취체규칙」은 일반인들이 양귀비를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경찰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허가받은 자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다. 아편 생산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할 때는 재배자의 신원(성명, 주소, 원적(原籍)), 양귀비 재배 장소와 면적을 갖춘 서류를 관할 경찰서(혹은 헌병대)에 제출해야 했다. 그 뒤,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경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액 채취 시작 3일 전에 채취 목적을 경찰서장에 보고해야만 했으며 유액의 수량은 채취 종료 3일 전에 보고해야 했다. 경찰서장은 양귀비 재배자에 대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앵속재배취체규칙」과 이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재배 허가를 주지 않았고, 의약품의 원료로 유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약업 종사자에게 양귀비 재배 허가를 내줬다. 조선총독부는 「앵속재배취체규칙」을 통해 양귀비 밀재배자들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아편을 생산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 양귀비 재배 정책은 순조롭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100문(匁)²³⁾ 당, 모르핀 함량 10%에 10원 내외였던 아편이 전쟁 중에는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올라, 같은 양과 모르핀 함량에 25원대에 달했다.²⁴⁾ 아편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양귀비 재배 희망자가 증가했다. 함경도와 같이 산림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아편 생산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재배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또한 황해도 곡산 지역의 경우 “당국이 물가 등귀로²⁵⁾ 인한 빈민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양귀비 재배를 허가해 유액을 중국으로 수출해 돈을 벌게 해주는 고마운 일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에 혹한 사람 중에는 양귀비 재배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했다.²⁶⁾ 「앵속재배취체규칙」에 의해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던 충청북도에는 양귀비 재배권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만주에서 양귀비 씨앗을 구해와 양귀비를 재배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²⁷⁾ 이렇듯 양귀비 재배 자격이 없는 일반 주민들에 의해 재배되는 양귀비가 증가하자 아편이 무제한으로 생산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양귀비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다. 이에 경무총감부 위생과 당국자는 “원래 황해도와 충

사서」, 『每日新報』, 1916.08.18. ; 「罌粟 密耕이 甚多, 관헌의 검거가 곤란」, 『每日新報』, 1916.08.23.

22) 「罌粟栽培取締規則」이 시행된 지역을 순서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황해도(1917.03.31.) - 충청북도(1917.11.02.) - 평안남도(1917.12.06.) - 함경북도(1918.05.02.) - 전라남도(1918.05.11.) - 평안북도(1918.05.17.) - 경기도(1918.06.05.) - 전라북도(1918.09.27.) - 강원도(1918.11.02.)

23) 당시 무게 단위는 다음과 같다. 1匁 = 1돈 = 3.75g, 1貫 = 3.75kg 본고는 인용문 외에 본문의 무게 단위를 kg으로 통일했다.

24) 朝鮮銀行調査部, 『朝鮮事情』, 1920, 17쪽.

25)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특수로 일제는 대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기행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물가 상승 문제를 불러왔다(배석만,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와 조선 경제」, 『3·1운동 100주년 총서』 4, 휴머니스트, 2019, 23~25쪽.).

26) 「怪風說, 罌粟 재배를 허가한다고, 황해도 곡산지방의 풍설」, 『每日新報』, 1917.12.08.

27) 「罌粟栽培와 取締」, 『每日新報』, 1918.03.01.

청북도 경무부 등에서 발포한 양속재배취체규칙은 양속재배를 취체하기 위함으로. 결코 양속재배를 허가해주기 위하여 규정한 것은 아닌데”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용 약품을 제조할 목적이 있는 약제사에게만 허가해준다고 말했다.²⁸⁾ 이후, 1918년 6월 5일에 경기도에서 시행된 「양속재배취체규칙」에는 양귀비 재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수록되었다.²⁹⁾

의약품 제조 목적이 있는 제약자나 약제사에게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양귀비 재배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과 관련된 소문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은 법령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면장과 이장이 「양속재배취체규칙」의 내용을 오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양귀비를 재배하도록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충청북도 충주군에는 일반인도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양귀비 재배권을 얻고자 행정 당국에 청원하는 일이 있었다.³⁰⁾ 함경남도 함흥군에서도 양귀비 재배권을 얻기 위해 운동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재배권을 얻기 위해 서울로 가려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흥군의 일부 농민들은 재배 허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고 밭에 보통작물을 파종하지 않기도 했다.³¹⁾ 또한 약제사와 제약사에게만 양귀비 재배 허가를 준다는 조항에 따라 식민지 조선 각 지역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사칭(詐稱)하고 농민들에게 양귀비를 재배하도록 권유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의 권유로 양귀비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보통작물뿐만 아니라 특수작물인 담배도 재배하지 않는 폐해가 있었다. 물론 제약회사 사칭자들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재배 허가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권유로 재배된 양귀비는 모두 단속대상이었다. 경찰 당국은 「양속재배취체규칙」을 위반한 양귀비밭의 양귀비를 모두 뽑아 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했다.³²⁾

「양속재배취체규칙」이 적용되었던 1919년은 재배자만 6,984명이었고, 면적은 2,308정보(町步)³³⁾에 달했다.³⁴⁾ 이는 양귀비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1933년의 면적(2,259정보)과 비슷한 수치였다. 그러나 「양속재배취체규칙」의 재배자 조건 조항을 오해하여 양귀비를 재배한 사례와 제삼자의 권유에 의한 재배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의 조사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인접한 국경 부근이나 각 지역의 산림지대에서 이뤄진 밀재배까지 고려하면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자의 규모는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조선총독부는 아편 엄금정책에 따라 양귀비 밀재배자들을 단속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아편 가격이 급등하자 식민지 조선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일이 성행

28) 「罌粟栽培와 取締」, 『每日新報』, 1918.03.01.

29) 「罌粟栽培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 1918.06.05. ; 경기도 외에 1918년 9월 27일에 「罌粟栽培取締規則」이 시행된 전라북도에서도 경기도와 동일한 재배 허가자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두 지역을 제외하면 재배 허가자 조건은 구체적이지 않다.

30) 「忠北의 罌粟熱, 풍설만 듣고 청원질」, 『每日新報』, 1918.11.11.

31) 「罌粟을 栽培」, 『每日新報』, 1919.02.13.

32) 「罌粟栽培를 권유하다가 잡힌자」, 『每日新報』, 1918.11.03. ; 「甘言에 見欺치 말라, 양속을 재배한다고 감언으로 권유」, 『每日新報』, 1919.04.02. ; 「無許可罌粟栽培, 當局嚴罰方針」, 『每日新報』, 1919.05.14. ; 「罌粟의 密栽, 간상의 재배권유」, 『每日新報』, 1919.05.15. ; 「咸興: 罌粟取締嚴重」, 『每日新報』, 1919.05.18.

33) 당시 면적 단위는 다음과 같다. 1町步 = 3,000평, 1段/反步 = 300평, 1畝步 = 30평, 1步 = 1평이다. 면적 단위는 간략한 표기를 위해 무게 단위와 달리 옛 단위인 정보로 기재했다. 비교 대상으로 축구장 넓이를 들 수 있다. 축구장의 넓이는 약 2,495평으로 1정보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34)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1921, 189쪽.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앵속재배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경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약업 종사자 등에게만 양귀비 재배 및 아편 생산을 허가하여 안정적인 의약용 아편 확보와 아편 확산 방지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편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서 일반인들의 양귀비 재배 욕구를 막을 수 없었다. 「앵속재배취체규칙」 조항의 모호한 양귀비 재배자 기준과 출처 불명의 소문, 외부인의 양귀비 재배 권유로 인해 식민지 조선 곳곳의 일반 주민들에 의해 양귀비가 무허가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양귀비 무허가 재배자들에게 양귀비는 자신들이 처한 빈곤한 현실을 구제해주고, 부를 가져다주는 식물이었다고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다르게 양귀비가 계속 재배되자 조선총독부는 새로운 통제 방법을 마련해야만 했다.

2)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과 양귀비 재배 구역 재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1차 세계 대전은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앵속재배취체규칙」과 같은 법령 제정과 경찰 당국의 검거로 무허가 양귀비 재배자들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통제 정책 정비가 필요했다.³⁵⁾

이에 1919년 6월 11일에 「조선아편취체령시행규칙(朝鮮阿片取締令施行規則)」과 「조선아편취체령」이 시행되었다. 두 법령은 아편의 관리뿐만 아니라 양귀비 재배에 관한 사항도 「앵속재배취체규칙」에 비해 상세했다. 물론 「조선아편취체령시행규칙」의 경우 이전 「앵속재배취체규칙」의 양귀비 재배 신청과정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 외에는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재배 구역을 도 경무부령으로 지정했다면, 「조선아편취체령」에서는 조선총독이 재배 구역을 지정했다. 재배 구역 지정과 폐지는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고시되었다. 재배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양귀비 재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했다. 『조선전매사』 제3권을 살펴보면 양귀비 재배 구역과 재배자(혹은 지원자)에 관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다음 표는 양귀비 재배 구역에 관한 조건이다.

35) 1932년 만철경제조사회(滿鐵經濟調査會)에서 간행된 『朝鮮阿片麻藥制度調査報告』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통제된 구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뒤, 모르핀과 헤로인으로 제조해 일본, 중국, 만몽(滿蒙), 남양 등지로 수출할 계획을 세워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다고 한다(滿鐵經濟調査會製5部, 『朝鮮阿片麻藥制度調査報告』, 1932, 3~4쪽.).

<표 1>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 조건³⁶⁾

순번	내용
1	재배 구역은 단속상 종래 재배해온 경기, 충청북, 전라북, 황해 및 강원 5도에 국한한다.
2	재배 구역은 단속상 국경 부근, 시가지 부근과 철도 연선을 피한다.
3	재배 구역은 단속의 편의상 될 수 있으면 경찰관서 소재지에 가까운 토지를 선정한다.
4	재배 구역은 면을 단위로 한다.
5	재배지는 양귀비 재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선정한다. 단, 임야 및 잡종지와 10정보 미만의 토지를 제외한다.
6	재배 구역은 인삼, 담배, 면화, 시탕무 등 주요한 특수농작물의 경작을 방해하지 않는 토지를 선정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518~519쪽.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양귀비 재배 구역에 관한 조건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①, ②, ③, ④, ⑤은 양귀비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먼저, ①의 재배 구역은 「양속재배취체규칙」이 시행되었을 때의 양귀비 재배 구역과 동일하다. 만약 기존 재배 구역이 아닌 신규 재배 구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다면 재배 구역 변동과정에서 양귀비 씨앗이나 생산된 아편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신규재배 구역에서는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행정업무(재배 면적 산출, 재배지 지정 등)를 처리해야 했기에 단속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단속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재배 구역을 선정했다.

②은 아편의 밀거래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중국과 만주 일대는 아편류 마약 중독자들이 많았기에 아편 밀매단은 국경의 산림지대에서 양귀비를 밀재배한 뒤, 생산된 아편을 이들에게 팔아 수익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국경지대인 평안도와 함경도는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과거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던 전라남도도 모르핀 중독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⁷⁾ 여기에 아편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가 많았던 대구부와 부산부 같은 지역은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양귀비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연선을 피해서 재배 구역을 지정했다.

③, ④, ⑤은 세밀한 양귀비 재배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과 같이 양귀비 재배 구역을 경찰관서와 가까운 곳을 지정한다면 경찰에서 양귀비 재배나 아편 생산과 관련한 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재배 구역을 막연히 도(道)로 지정하기보다 더 작은 단위인 면(面)으로 하는 것과 양귀비 재배 단속에 곤란한 산림지대나 습지대 등의 임야와 잡종지를 양귀비 재배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편 유출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의 경우, 당시 양귀비 재배 성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36) “一 栽培區域ハ取締ノ都合上從來栽培シ來レル京畿, 忠北, 全羅北, 黃海及江原ノ五道ニ局限ス”, “二 栽培區域ハ取締ノ關係上國境附近, 市街地附近及ル成ベク鐵道沿線ヲ避ク”, “三 栽培區域ハ取締ノ便宜上成ルベク警察官署所在地ニ近キ土地ヲ選定ス”, “四 栽培區域ハ面ヲ單位トス”, “五 栽培地ハ罌粟栽培ニ適スト認ムル土地ヲ選定ス但シ林野及雜種地並十町步未滿ノ土地ヲ除ク”, “六 栽培區域ハ人蔘, 煙草, 綿, 甜菜等主要ナル特殊農作物ノ耕作ヲ妨ゲザル土地ヲ選定ス”

37) 「阿片針의 跋扈! 惡醫師의 奸計! 滅亡에 瀕한 全羅南道」, 『東亞日報』, 1920.09.06.

아편 가격이 급등하자, 경찰 당국의 허가 없이 양귀비 재배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쌀과 같은 보통작물뿐만 아니라 특용작물 재배자도 있었다. 양귀비 재배자와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아편류 마약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양귀비가 수익성이 좋은 특용작물 재배지를 잠식해나가는 현상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운영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먼저 담배와 인삼은 조선총독부의 전매 세입과 관련 있었다. 담배는 전매국의 전매품 중에서 세입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소비도 많았고, 식민지 조선 곳곳에서 재배되었다.³⁸⁾ 인삼도 전매국 세입에서 담배 다음이었는데,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중국에 약재로 수출되었다. 면화와 사탕무는 일본의 원료 및 식량 공급에 필요한 작물이었다. 먼저 면화는 일제시기 초부터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재배한 특용작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값싼 면화를 일본 본토로 수출해 일본 방직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18년 식민지 조선의 면화 재배 면적은 약 10만 정보에 달했다.³⁹⁾ 사탕무는 설탕 소비 증가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설탕 가격이 폭등하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을 설탕 원료 공급지로 만들고자 재배되기 시작했다, 사탕무는 사탕수수과 달리 온대에서 재배 가능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재배 가능했다. 대일본제당회사가 식민지 조선에서 설탕 생산을 맡았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일본제당회사에 보조금을 교부했을뿐만 아니라 권업모범장에 사탕무 재배 연구 및 시험 재배하도록 했다.⁴⁰⁾

조선총독부는 양귀비 재배 지원자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귀비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 「양속재배취체규칙」처럼 자신의 신원과 양귀비 재배 주소, 재배 목적 서류를 갖춰서 경무부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양속재배취체규칙」과 같이 약업 종사자에게만 양귀비 재배 허가를 주지 않았다. 「양속재배취체규칙」과 마찬가지로 재배 신청자의 신원과 양귀비 재배지에 대한 사항(위치, 면적), 목적을 담은 서류를 구비하고 경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대신 아편류 마약 중독자 및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양귀비 재배를 허가해주지 않았고 신원이 명확해야 했다. 그리고 직접 양귀비를 재배하는 자가 명의를 올려야 했고 타인의 명의를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양귀비 재배지는 재배자 한 명당 1반보 이상 10정보 미만의 면적에 단속하기 적합하고, 보통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토지를 배정해줬다. 양귀비 재배지 1개소마다 재배지 주소와 아편 생산인의 신원을 기재한 표목을 세워두도록 했다. 「양속재배취체규칙」과 마찬가지로 양귀비 유액을 채취할 때는 3일 전까지 채취 착수 시기를, 아편 생산이 끝날 때는 10일 이내에 그 수량을 경찰서나 헌병분대 등에 신고해야 했다.

재배 신청자가 아편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 당국이나 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다. 이는 양귀비 재배에 민족 제한이 없었음을 의미했다.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래 <표 2>는 1921~1923년 사이에 민족별 양귀비 재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38) 1932년의 상황을 보면 평안북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담배가 재배되었다고 한다. 1932년 담배 경작 면적을 보면 총 13,638정보였다. 이 중 충청북도가 4,236정보, 강원도는 2,719정보, 전라북도 1,598정보에 달했다고 한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年報』, 1936. ; 「全朝鮮의 煙草耕作 <昨年中狀況」, 『東亞日報』, 1932.03.15.).

39) 면화가 주 생산지였던 조선 남부지역(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과 평안남도도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혹은 재배 구역이 거의 없었던)로 추측할 수 있다(「朝鮮織物現況과 生産振興策 (七)」, 『東亞日報』, 1923.08.11. ; 日滿棉花協會朝鮮支部, 『朝鮮의 棉花事情』, 1937, 10쪽. 참고).

40) 이은희, 「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75~77쪽. ; 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上, 민속원, 2018, 244~245쪽.

<표 2> 연도별·민족별 양귀비 재배자 현황

연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총계	
	재배 인원	재배 면적 (정보)	재배 인원	재배 면적	재배 인원	재배 면적	재배 인원	재배 면적
1921년	1,244	444.2	6	8.7			1,250	452.9
1922년	1,131	430.7	1	3.6	2	2.4	1,134	436.7
1923년	1,008	367.2	1	4.4	3	5.9	1,012	377.5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1·1922·1923.

<표 2>를 보면 조선인 재배자와 이들이 재배하는 양귀비 재배 면적이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민족에 의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양귀비 재배 구역과 면적 제한이 없었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국경지대에 재배하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았다.⁴¹⁾ <표 2>에서 1922년과 1923년의 중국인은 모두 황해도에서 양귀비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함경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기록은 밀재배 사례를 제외하면 없었다.

양귀비 농가에서 생산된 아편은 경찰 당국의 관리하에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한 뒤, 경무부에 제출해야 했다. 보통 아편 납부는 8월 중순이나 9월에 시작되어 11월에 종료되었다. 이때 아편 용기에 납부서와 아편의 중량, 납부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목찰을 함께 붙여야 했다. 납부된 아편은 조선총독부 재무국 전매과로 발송되었다.⁴²⁾ 전매과에서는 아편의 모르핀 함량을 분석한 뒤, 함량에 따라 아편 배상금을 양귀비 농가에 교부했다. 납부받은 아편이 많을 때는 다음 해까지 분석 작업이 이뤄져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배상금을 재배자들에게 교부했다. 아편 성분 분석은 보통 12월에 완료되었다. 아편 배상금은 모르핀의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되었기에 시기별 배상금은 달랐다.⁴³⁾ 모르핀 함량이 2% 미만의 아편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해당 아편은 소각되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아편을 생산한 것이 발각되면 경찰 당국에서는 해당 아편을 소각시켜버리고, 생산자를 추적해 양귀비 재배 허가권을 박탈했다.⁴⁴⁾

41) 중국인의 경우 아편 흡연 문화와 경성내 중국인 거리의 아편굴 문제 같은 이유로 아편류 마약 중독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다(오미일, 「정주와 이주 사이의 동아시아;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그러한 인식 때문에 중국인에게 재배지로 함경도를 지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2) 1921년 전매국 관제로 전매국이 창설되어, 재무국 전매과에서 담당해왔던 아편 감정 및 매하 등의 사무는 1921년 4월부터 전매국에서 담당했다. 이후, 1925년의 행정정리로 전매국에서 담당하던 아편 업무는 경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모르핀 중독자와 부정 거래가 빈번해지고 1927년 지정 제약자인 다이쇼 제약 주식회사 직원에 의한 대규모 모르핀 밀매 사건이 일어났다. 그 결과 다이쇼 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지정이 취소되고 모르핀 제조는 관영으로 전환되었다. 아편류 마약 관련 범죄 단속은 경무국이 맡았지만, 1929년부터 아편 수납과 아편 배상금 교부, 모르핀 수납 업무는 전매국으로 환원되었다(「製藥會社中心으로 모히密賣事件發覺」, 『동아일보』, 1927.09.08.; 朝鮮總督府, 『朝鮮總攬』, 1933, 877~878쪽.).

43) 1926년의 아편 배상금의 경우, 모르핀 함량 2% 이상 5% 미만에 총량 1그램의 아편이 21전, 5% 이상 9% 미만 1그램당 24전, 9% 이상 13% 미만 1그램당 26전, 13% 이상 1그램당 30전이었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536쪽.).

납부된 아편은 제약용과 의약용으로 분류되었다. 제약용 아편은 지정 제약자에게 불하(拂下)하여 판매하도록 했는데, 이때 지정 제약자는 다이쇼 제약주식회사(大正製藥株式會社)였다. 다이쇼 제약주식회사는 불하받은 아편을 경기도 고양군 아현리의 공장에서 모르핀으로 제조하여 판매했다. 1929년에 모르핀 제조가 관영으로 변경될 때까지 다이쇼 제약주식회사가 모르핀을 독점 판매했다.⁴⁴⁾

의약용 아편은 지정받은 의약용 아편 판매인이 판매하도록 했다. 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약사나 약중상으로 제한했고, 아편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면 경무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의사, 치과 의사, 수의(獸醫) 등 의료인은 의약용 아편이 필요하다면, 의약용 아편 판매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조선총독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의약용 아편을 판매할 수 없었다.

1919년 8월 2일에 「조선아편취체령」 제 3조 “앵속재배 구역은 조선총독이 고시한다.”에 따라 「앵속재배구역」이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라 고시되었다. 위의 재배 조건에 적합한 경기도, 황해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의 면들이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앵속재배구역」이 고시된 이후에 바로 해당 구역에서 양귀비가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양귀비 씨앗 파종이 이미 끝나고, 유액 채취가 이뤄지는 8월에 「앵속재배구역」이 고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양귀비 재배자들은 이전에 제정된 「앵속재배취체규칙」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다. 「앵속재배구역」에 따른 양귀비 재배는 다음 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20년 2월 2일에 양귀비 재배 구역을 재설정된 「앵속재배지정구역추가(罌粟栽培指定區域追加)」가 고시되었다. 양귀비 재배 지원자가 있었던 경상남도 4개 군(郡)인 거창군(남상면 외 8개 면), 산청군(생초면), 함양군(서하면 외 4개면), 함천군(초계면 외 5개면)이 새로운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아편취체령」 이후의 새로운 양귀비 재배 구역은 1920년의 「앵속재배지정구역추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충청북도·황해도·경상남도가 「조선아편취체령」에 의한 첫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양귀비 재배 구역을 여러 이유에 의해 새롭게 추가하거나, 해제시키기도 했다. 1921년 1월 28일의 「앵속재배구역지정중개정(罌粟栽培區域指定中改正)」에서부터 재배 구역의 변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전라북도·강원도·경상남도 내의 일부 면과 충청북도 전체가 양귀비 재배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양귀비 재배 구역 해제 원인은 『조선전매사』 제3권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 지원자가 없어서 해제되었다고 한다. 「앵속재배취체규칙」 시행 당시에 충청북도에 양귀비 재배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과는 대조된다.

44) 함경남도 장진군 중남면의 주민 34명이 납부한 아편의 길면은 순수 아편인데, 속 면에 잎과 줄기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다. 경무국 위생과에서는 해당 아편 제출자들이 ‘부정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수납된 불량 아편은 소각시켰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양귀비 재배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不良阿片燒却하고 栽培權까지 取消 아편제조자의 주의할 일 石川衛生課長談」, 『每日申報』, 1926.08.08. ; 「不良阿片 燒却!」, 『朝鮮日報』, 1926.08.08.).

45)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르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다이쇼 제약주식회사에는 재고 모르핀이 쌓여갔다. 결국 1927년에 다이쇼 제약주식회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모르핀 밀매가 발생했다. 조선총독부는 다이쇼 제약주식회사를 지정계약자에서 취소시키고 모르핀 제조와 판매를 관영으로 전환했다(「大正製藥과解約 官營으로 『모히』 製造」, 『東亞日報』, 1928.06.23.).

<표 3> 1920년 경기도 양귀비 재배 면적

군명	허가면적(정보)	실제면적	비율(%)
고양군	5.3	1.2	22.6
파주군	14.8	6.4	43.2
장단군	1.3	1.3	100
양주군	3.7	1.8	48.6
개성군	24.8	12.6	50.8
총계	49.9	23.3	46.7

출전 : 「京畿罌粟不作」, 『東亞日報』, 1920.07.31.

<표 3>은 1920년 경기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다. 1920년 경기도에 허가된 양귀비 재배 면적은 49.9정보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94정보였는데 경기도가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⁴⁶⁾ 그러나 밭아 불량으로 장단군을 제외하고 실제 재배 면적은 허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기도 내의 다른 양귀비 재배 구역인 안성군과 시흥군에서는 양귀비가 재배되지 않았다. 그래서 1921년에 경기도 안성군이 양귀비 재배 구역에서 삭제되었다. 재배 구역에서 삭제된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으로는 강원도 김화군의 3개 면(김화면, 근동면, 금성면)과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면이 있다. 그리고 함경도가 새로운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922년 2월 25일에는 「앵속재배구역지정의건중개정(罌粟栽培區域指定ノ件中改正)」에 따라 함경북도 명천군의 상우남면과 아간면, 길주군의 양사면과 장백면, 부령군의 서상면, 무산군의 어하면 외 3개 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함경도의 경우, 구한말부터 양귀비 밀재배 및 아편 밀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함경도는 도의 대부분이 산림지대로 이뤄져 있어서 아편 밀매단이 경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양귀비를 밀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⁴⁷⁾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식민지 조선 곳곳으로 거래되어 중독자들에게 거래되었다. 혹은 중국이나 만주로도 은밀히 거래되거나⁴⁸⁾ 만주의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이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었다.⁴⁹⁾ 그런데도 함경도를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한 이

46) 『朝鮮總督府專賣年報』와 『朝鮮專賣史』第3卷를 통해 1920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94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의 면적이 양귀비 재배 허가 면적을 의미하는지 실제 면적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만약 실제 면적을 포함한다면 경기도는 94정보에서 약 24.8%를 차지하고 있었다.

47) 산림지대는 경사가 높고 수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 평, 넓게는 수십만 평의 양귀비 밀재배지를 경찰 당국의 감시망으로부터 숨길 수 있었다. 함경북도 경성군 어대진의 산골민들은 경찰에 뇌물을 쥐 40~80만 평에 달하는 땅에서 양귀비를 밀재배했다(「罌粟密培者 三百名, 敬성에서 검거」; 『東亞日報』, 1920.08.22. ; 「三百石 검거, 阿片栽培事件」, 『每日新報』, 1920.08.22). 또한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양귀비 밀재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밀재배지 검거는 어려운 일이었다. 산림지대에서 양귀비 밀재배를 하면 맹수의 습격이나 경찰과 같은 외부자의 '우연한' 접근을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총기류를 소지하는 자들도 있었다(「阿片密造犯人 全部逮捕된, 함북경성에서」, 『每日新報』, 1917.08.30).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경찰 당국에서는 양귀비 밀재배지 단속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산림을 수색해야만 했다.

48) 「罌粟栽培犯 김기하 외 33명 처형」, 『每日新報』, 1921.01.09. ; 「阿片을 密賣타가」, 『每日新報』, 1921.09.17. ; 「現場에서押收된것만 價格二萬五千圓」, 『朝鮮日報』, 1927.07.28.

49) 국권피탈 이전(1904~1905) 일본인 농학자들에 의해 이뤄진 농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도에

유는 양귀비 재배 희망자가 많았던 점도 있었겠으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편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⁵⁰⁾ 즉, 양귀비 밀재배 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에 양귀비 재배 허가를 내려 밀재배자들이 전매국으로부터 아편 배상금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양귀비 밀재배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⁵¹⁾ 함경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추가되자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다음 표는 함경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추가되었던 1921년의 지역별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1921년 지역별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 인원

도명	재배 면적(정보)	재배 인원
경기도	23.7	30
충청남도	0.4	1
전라북도	1.7	5
경상남도	1	9
황해도	63.5	148
강원도	8.9	8
함경남도	280.6	932
함경북도	73.1	117
총계	452.9	1,250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1

<표 4>를 보면 양귀비 재배 규모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경기도 순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중·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양귀비가 활발히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환경을⁵²⁾ 지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혼다 코스케 외 3명·김장규 외 2명,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1, 민속원, 2013, 670~672쪽.). 만주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 기술을 배워온 신원불명의 자가 함경남도에 들어와 양귀비를 밀재배하고, 식민지 조선 각지에 아편을 밀거래한 사례가 있다(『阿片密賣團檢舉리례式으로巧妙히行動檢舉따라意外多數』, 『朝鮮日報』, 1938.09.22.).

50)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521~ 522쪽.

51) 양귀비 재배를 허가한다면, 아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도 불러왔을 것이다. 즉, 아편 엄금정책을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양귀비 재배금지 정책을 취하면 아편 공급의 감소와 함께 아편의 밀거래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중국 군벌 장췌린(張作霖)의 양귀비 재배 허가를 들 수 있다. 장췌린이 양귀비를 재배하도록 허가하자 만주 일대에서는 양귀비 재배지가 증가해 아편 가격이 폭락했다. 이로 인해 종래 만주 거주 중국인에게 아편을 밀매하던 조선인 아편 밀매자들은 아편 거래가 어려워졌다고 장췌린을 원망했다고 한다(『國境見聞記 六 甲山事件踏査를마치고』, 『朝鮮日報』, 1929.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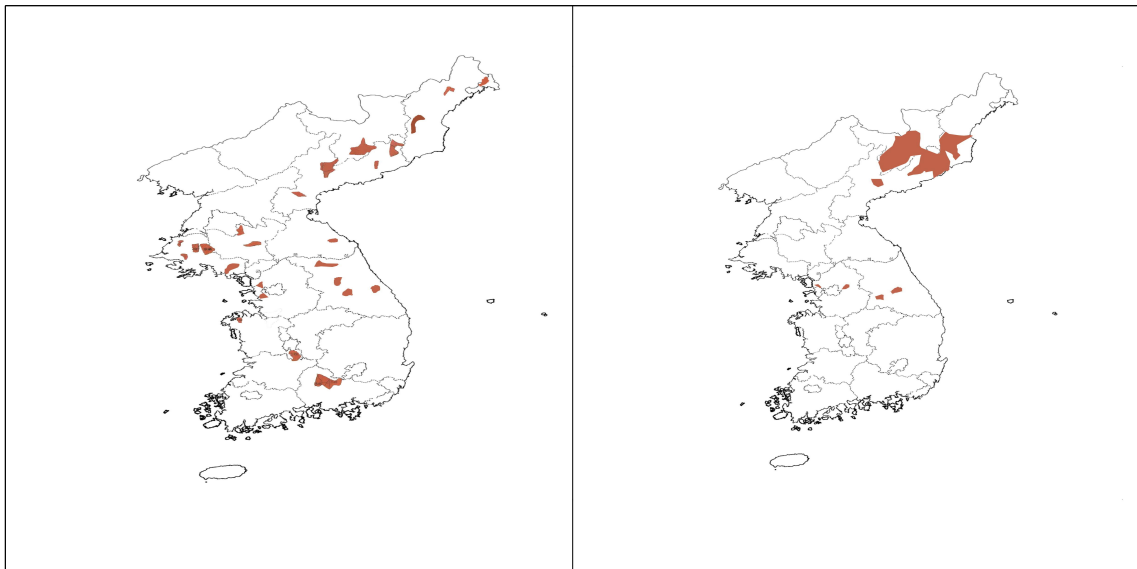
52) 양귀비는 내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원산지가 기온이 높은 남유럽과 같은 지역이다. 따라서 함경도와 같은 북부지역보다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삼남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31쪽.). 또한 양귀비는 척박한 토지보다 비옥한 토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곡창지역으로 알려진 삼남지역이 양귀비 재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국권피탈 전 조선을 방문했던 니탄조 오토조(二反長音藏)는 전라북도 삼례 지역의 점토(粘土)와 모래땅(沙土)을 보고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榮書房, 2002, 50쪽.).

서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 인원은 식민지 조선 중·북부 지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시기 동안 계속 이어졌다.

1922년 4월 29일에는 「양속재배구역중개정(糧粟栽培區域中改正)」에 따라 양귀비 재배 구역 단위는 면(面)에서 도(道) 단위로 변경되었다. 도를 기준으로 재배 구역이 설정된 이유는 양귀비 재배 조건이 맞지 않은 지역의 경우 변경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복잡했고, 단속 방침에 동요가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⁵³⁾ 그래서 과거 1917~1918년의 「양속재배취체규칙」과 비슷하게 도지사의 의견에 기초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양귀비 재배 구역을 설정하고자 했다. 1922년의 양귀비 재배 구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였다. 이는 「조선아편취체령」에 의해 양귀비가 재배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양귀비 재배 구역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를 단위로 양귀비 재배 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1922년 이후의 양귀비 재배 구역에 대한 면 단위의 세밀한 파악은 어렵다. 이렇듯 양귀비 재배 구역은 1920년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변화 과정을 겪었다. 초기의 재배 구역은 식민지 조선 곳곳에 지정되었지만, 양귀비 재배 지원자의 감소와 행정의 편리 등의 이유로 인해 재배 구역은 축소되었다. 1931년에 이르면 양귀비 재배 구역은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에 그쳤다. 양귀비 재배 구역이 축소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2장 3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양귀비 재배 구역 축소와 유지

앞 절에서 보았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은 1922년 2월 25일에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더 추가되는 구역 없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의 <그림 1>에서는 재배 구역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1920년, 1929년 양귀비 재배 구역 비교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0·1929.

※ (좌) 1920년 양귀비 재배 구역, (우) 1929년 양귀비 재배 구역.

53)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523쪽.

※ 그림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은 색칠된 부분.

<그림 1>에서 좌측은 1920년의 양귀비 재배 구역이며, 우측은 1929년의 양귀비 재배 구역이다. 1920년에는 식민지 조선 곳곳에 양귀비 재배 구역이 있었지만, 1929년에는 식민지 조선 중·북부 지역만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남았다. 이러한 감소세에 대한 주된 원인은 아편 배상금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아편류 마약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편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의 종전과 함께 양귀비 주산지로부터 아편 수입이 재개되자 아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 100문에 모르핀 함량 10%의 아편이 25원이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120문에 모르핀 함량 14%의 아편이 10원 내외의 가격으로 하락했다.⁵⁴⁾ 이에 따라 양귀비 농가에 교부할 아편 배상금도 하락했다.

전쟁 중 양귀비 재배 열풍에 따라 큰 비용을 들여 양귀비 재배를 준비한 재배자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었다. 한 해 아편 생산 성적에 따라 받는 아편 배상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갔기에 배상금 하락 문제는 양귀비 재배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었다.⁵⁵⁾ 양귀비 재배자들은 도 당국에 아편 배상금을 인상해줄 것을 진정했는데, 그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어 경성(京城)으로 상경해 조선총독부에 직접 진정하려는 재배자들도 있었다.⁵⁶⁾ 조선총독부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혼란에 대응해 배상금 납부나 각종 경비(經費)에서 발생한 공제 금액으로 이전 가격에 가깝게 아편 가격을 지정해 양귀비 재배자들의 손실을 보충해줬다.⁵⁷⁾ 그러나 아편 배상금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만큼 회복되지는 않았다. 1920년에는 모르핀 함량 2~3% 미만에 100문의 아편에 5원 배상해주는 것을 3원으로 낮췄다. 3~5% 미만 때 1% 증가할 때마다 2원이 추가되는 것이 1원 10전으로, 5~11% 미만은 매 1%가 증가할 때마다 1원 50전에서 80전으로, 11% 이상의 것은 1원에서 50전씩 증가하도록 지정했다.⁵⁸⁾ 아편 배상금이 감소하자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데 영향이 갔다. 다음의 <표 5> 1919년에서 1934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지정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연도별 양귀비 지정 재배 면적 및 실제 재배 면적

연도	지정 재배 면적(정보)	실제 재배 면적(정보)	실제 재배 면적 / 예상 재배 면적(%)
1919년		2,308	
1920년	1,930	94	4.9%
1921년	1,900	452	23.8%
1922년	1,800	436	24.2%

54) 朝鮮銀行調査部, 『朝鮮事情』, 1920, 17쪽.

55) 1920년 전매과에서 공제 금액으로 양귀비 재배자에 대한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朝鮮阿片取締令」이나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양귀비 재배 실패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有夫女가他男子와음식가지먹지못할의무가없다문테의녀자김려생의승소판결」, 『東亞日報』, 1921.09.04.).

56) 「罌粟業者 結束上京? 양귀비값을 올리고자 서울에 올라오게 된다」, 『每日新報』, 1919.11.21.; 「罌粟栽培 先後策」, 『每日新報』, 1919.12.09.

57) 「阿片賠償金交付에就하야」, 『東亞日報』, 1920.06.20.

58)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531~534쪽.

연도	지정 재배 면적(정보)	실제 재배 면적(정보)	실제 재배 면적 / 예상 재배 면적(%)
1923년	1,800	377	20.9%
1924년	1,800	333	18.5%
1925년	1,800	283	15.7%
1926년	1,800	281	15.6%
1927년	1,800	370	20.5%
1928년	1,800	418	23.2%
1929년	2,100	752	35.8%
1930년	2,100	741	35.2%
1931년	1,560	1,062	68.0%
1932년	1,560	1,096	70.2%
1933년	2,560	2,259	88.2%
1934년	2,560	2,196	85.9%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527쪽.

조선총독부는 아편류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아편 수량에 따라 매년 양귀비 재배 면적을 미리 지정해두었다. 그러나 <표 5>와 같이 실제 재배 면적은 지정 재배 면적에 미치지 못했고, 1931년에 들어와서야 지정 재배 면적의 68%에 달하기 시작했다. 만주국 수립 이후인 1933년에 가면 실제 재배 면적은 예상 재배 면적의 88%에 도달했다. 즉, 1920년대 동안 실제 양귀비 재배 면적이 예상 양귀비 재배 면적의 50%에 달하지 못한 것은 아편 배상금 하락이 양귀비 재배 구역 및 재배 면적 축소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이는 식민지 조선 남부지역에서 양귀비가 더이상 재배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남부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기에 아편 배상금이 폭락한 상황에서 양귀비보다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적당했다.⁵⁹⁾

아편 배상금 하락뿐만 아니라 양귀비 재배 기술 및 유액 채취의 미숙련도 양귀비 재배자들의 이탈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아편은 모르핀 함량에 비례해 배상금이 결정되었다. 모르핀 함량은 자연환경, 재배 기술과 품종 개량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식민지 조선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1920년대 일본 본토의 아편 성적과 비교하면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양귀비가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 알 수 없다. 19세기 오사카 지역에서 양귀비가 재배된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아편전쟁으로 아편의 해로움을 인지했다. 메이지 원년인 1868년부터 아편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1875년에 아편 전매법이 제정되어 양귀비를 자유롭게 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한다.⁶¹⁾ 양귀비 재배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장관(地

59)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491쪽.

60) “이 쇠퇴의 원인은 최초 호경기시(好景氣時)에는 그 가격에 현혹하였으나 가격의 하락이 쇠퇴의 원인이 되고, 차기 재배는 비상이 곤란하고 따라서 여러 중의 병해 기타로 소기의 성공을 보지 못함과 아편의 채취는 과이 숙련을 요(要)하는 등으로 소기의 수확이 없었던 결과라 생각한다. (중략) 분석은 늦어도 12월 10까지는 종료될 것이라 그리고 보통으로 총 함량 중 퍼센트 11% 과반을 점하고 최고 17% 극소량에 불과한바 각 함유량이 적은 것은 요컨대 제조에 불숙련한 결과로 인함이다(「阿片收穫激減」, 『東亞日報』, 1924.11.28.)”

方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⁶²⁾ 일본의 재래종 양귀비로 생산한 아편은 모르핀 함량이 8%를 넘지 못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모르핀 함량 8% 미만의 것에는 아편 배상금을 교부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재래종 양귀비로는 그 이상의 모르핀 함량을 지닌 아편을 생산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많은 양귀비 농가가 양귀비를 더 재배할 수 없었다.⁶³⁾ 한편, 오사카부 미시마군 후쿠이촌(大阪部 三島郡 福井村)의 양귀비 재배자 니탄조 오토조(二反長音藏)에 의해 양귀비 품종 개량이 이뤄졌다. 그가 개량한 품종은 크게 미시마종(三島種)과 후쿠이종(福井種)으로 나눌 수 있다. 두 품종 꽃의 색 모두 흰색이었다. 미시마종의 경우 줄기가 1m로 후쿠이종에 비해 긴 편이며, 유액의 분비량은 후쿠이종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모르핀 함량은 15~20%에 달한다. 후쿠이종의 경우 모르핀 함량은 보통 8%이며 미시마종보다 떨어지지만 유액 분비량은 월등히 많다. 또한 줄기가 짧아서 유액 채취 때 편리했다. 미시마종은 1만당 1kg 정도의 아편을 수확할 수 있지만⁶⁴⁾ 후쿠이종은 그 두 배의 아편을 채취할 수 있다. 개량 양귀비 보급과 함께 일본의 모르핀 함량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1908년에는 최저 10.2%, 최고 17.2%, 평균 13.1%의 모르핀 함량을 지닌 아편이 생산되었는데, 거둬진 모르핀 함량 상승으로 1914년에는 최저 8.9%, 최고 24.2%, 평균 17.5%에 달했다.⁶⁵⁾ 아편 배상금이 낮더라도 생산 아편의 모르핀 함량이 높아서 사정은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1년의 아편 배상금은 아편 100문에 모르핀 함량 3% 이상 4% 미만의 것에는 5원이었고, 같은 무게에 모르핀 함량 4% 이상 7% 미만은 1% 증가할 때마다 1원씩 더했다. 모르핀 함량 7% 이상은 1%씩 증가할 때마다 2원씩 더했다.⁶⁶⁾ 여기에 양귀비 재배 보급도 활발했는데, 니탄조 오토조는 내무성(內務省)에서 개최하는 ‘앵속재배강습회’에 강사로 촉탁되어 양귀비 재배법 강의를 했다. 그는 일본 전역을 순행하며 양귀비 재배법을 보급했다.⁶⁷⁾ 또한 그는 『앵속 재배법 아편 제조법(罌粟栽培阿片製造法)』을 저술해 일본의 각 농가에 양귀비 재배를 추천했다. 그가 집필한 서적 외에 벼의 이작(裏作)을 소개하는 작물을 다룬 『수전이작물재배법 : 유리 경제(水田裏作物栽培法 : 有利經濟)』에도 양귀비가 소개되어 있는데, 양귀비의 품종이나 재배법, 주의점,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되었다.⁶⁸⁾

1921년 일본의 양귀비 재배 현황을 보면 오사카부의 양귀비 재배 규모가 다른 부·현에 비해 컸다. 당시 일본 전체 양귀비 재배 인원수는 5,752명, 재배 면적은 704.3정보였다. 여기서 오사카부는 재배 인원 3,492명, 재배 면적 514.6정보로 전체에서 각각 60.7%와 73%를 차지했다. 오사카부 다음은 오카야마(岡山, 899명/54정보)와 와카야마(和歌山, 748명/71.4정보) 순이었다.⁶⁹⁾ 이는 양귀비 품종 개량과 재배법 개량, 일본의 온난한 기후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양질의 아편을 얻기에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⁷⁰⁾ 먼저 양귀비

61)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9~10쪽. ; 구라하시 마사나오·박강역, 『아편 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53쪽.

62) 二反長音藏, 『罌粟栽培及阿片製造法』, 1915, 15쪽.

63) 구라하시 마사나오·박강역, 『아편 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54쪽.

64) 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29~30쪽. ;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8~9쪽.

65) 倉橋正直·박강역,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66) 大藏省印刷局, 『官報』, 1921.06.09.

67)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과 함께 아편 가격 하락으로 양귀비 재배지가 축소되면서 그의 강습 활동도 점차 축소되어갔다(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栄書房, 2002, 43쪽.).

68) 農民叢書, 『水田裏作物栽培法 : 有利經濟』, 米本書店, 1925, 55~64쪽.

69) 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栄書房, 2002, 27쪽.

재배지 지정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양귀비 재배지는 보통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곳에 지정해줬다. 이는 제1차 세계 대전의 경험처럼 양귀비 재배지가 보통작물 재배지와 겹치지 않도록 해 보통작물을 수확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양귀비는 척박한 곳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모르핀 함량을 지닌 아편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작물과 마찬가지로 비옥한 재배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편 배상금은 납부 아편의 모르핀 함량에 비례했는데,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양귀비에서는 양질의 아편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1920년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양귀비 재배자들에게 양귀비 재배 및 유액 채취법⁷¹⁾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뒷장에서 설명하겠지만, 1930년대의 신문 기사에는 기수(技手) 과전과 경작계 설립을 통한 양귀비 재배법 및 아편 제조법 지도가 이뤄졌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1920년대 신문 기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일본 측의 기록에 따르면 1920년에 다이쇼 제약주식회사의 촉탁을 받은 니탄조 오토조와 기수들이 식민지 조선에 건너와 토질, 자연환경 조사를 하고 각지의 양귀비 재배자를 불러 모아 관련 강습을 했다고 언급될 뿐이다.⁷²⁾ 또한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양귀비 개량종을 양귀비 농가에 보급했다거나,⁷³⁾ 식민지 조선의 기후와 토질에 맞게 품종을 연구·개량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외에 조선부업장려회(朝鮮副業獎勵會)에서 1924년에 간행한 『조선부업전서(朝鮮副業全書)』에 일반 가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약초 중에 양귀비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는 유액 채취 및 아편 생산법이 소개되어 있을 뿐 양귀비 재배법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⁷⁴⁾ 일본과 아편 성적을 비교하면 양귀비 재배 면적은 두 지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아편 수납량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6>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70)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528쪽.

71) 양귀비의 유액은 미성숙한 열매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액체를 말한다. 한낮에 유액 채취 작업을 하면 굳어버릴 위험이 있어서 흐린 날이나 이른 아침에 유액 채취를 해야 한다. 또한 열매에 상처를 낼 때 너무 깊게 내면 종자가 있는 곳까지 상처를 낼 수 있어 유액 채취가 불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얇게 상처를 낸다면 유액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며 작업 속도가 늦어진다. 보통 1mm의 깊이로 상처 낼 것을 권유한다. 한 열매당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할 수 있는데 보통 5~6회 정도 가능하다. 유액 채취는 신경 써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숙련자와 비숙련자간의 수확량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朝鮮副業獎勵會, 『朝鮮副業全書』, 1924, 261쪽.; 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35~36쪽.; 마틴부스·오희섭 역, 『아편,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수막새, 2004, 20~21쪽.).

72) 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榮書房, 2002, 52~56쪽.

73) ‘三島種과如히優良種만播種케호고…’와 같은 신문 기사 내용(「罌粟栽培狀況」, 『每日新報』, 1919.07.30.)과 각 통계에 15% 이상의 모르핀 함량을 지닌 아편이 납부된 것을 통해 개량종 양귀비가 재배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74) 朝鮮副業獎勵會, 『朝鮮副業全書』, 1924, 258~262쪽.

<표 6>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양귀비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비교

연도	식민지 조선		일본 본토	
	재배 면적(정보)	아편 수납량(kg)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1920년	94	153	378	3,523
1921년	452	2,715	704	4,929
1922년	436	1,642	368	3,904
1923년	377	1,391	378	2,152
1924년	333	1,181	444	3,336
1925년	283	847	422	3,612
1926년	281	630	465	3,662
1927년	370	768	598	5,933
1928년	418	806	1114	12,820
1929년	752	1,500	1638	11,713
1930년	741	1,773	846	9,176
1931년	1,062	5,651	837	12,135

출전 : 滿鐵經濟調査會第五部, 『朝鮮阿片麻藥制度調査報告』, 1932, 9쪽. ; 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蔵その時代』, 共栄書房, 2002, 211쪽.에서 재인용

위의 표를 보면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 두 곳의 재배 면적의 경우, 두 곳 모두 대체로 상승 - 감소 -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지닌 조건에 따라 식민지 조선과 재배 면적에 차이가 있더라도 아편 수납량은 일본이 월등했다. 1922년과 1931년에는 식민지 조선이 일본보다 재배 면적은 넓었지만, 아편 수납량은 각각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본은 1921년과 1928년, 1929년의 재배 면적이 각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벼의 이작으로 보리나 양귀비 등을 재배했는데, 아편 배상금의 상승과 보리의 가격 하락에 따라 재배 면적이 결정되었다. 1921년에 보리값이 하락하는 대신 아편값이 상승하자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본 내의 아편이 과다하게 생산되어 일본 정부에서 양귀비 재배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⁷⁵⁾ 이는 식민지 조선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식민지 조선은 1920년대 동안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⁷⁶⁾

아편 성적이 낮은 가운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양귀비 재배자들은 한 해 양귀비 재배를

75) 구라하시 마사나오·박강 역, 『아편 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53쪽.

76) 여기서 두 지역 간의 양귀비 재배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뒤인 1920년대 동안 조선총독부는 대체로 아편 유출을 우려하면서 양귀비를 제한적으로 재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는 농가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도록 장려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사카나 와카야마현에서 양귀비가 대규모로 재배되었고, 양귀비 재배법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10쪽.). 일본에서 양귀비 자급자족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두 지역의 양귀비 재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양귀비를 재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양귀비 재배에 실패한 재배자들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양귀비 재배 구역 축소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조선 남부지역의 경우 토질과 자연환경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한 곳이었지만, 위의 이유로 결국 폐경에 이르렀다.

양귀비 재배 구역은 축소되고 있지만 1922년 이후부터 조선총독부는 재배 구역을 확장하거나 감소를 막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전매국과 같은 아편류 마약 관리 당국에 따르면 아편 정책은 ‘중독자 발생 및 아편 관련 범죄 예방’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⁷⁷⁾ 아래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매품인 담배·인삼·소금·아편이 전매국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율을 비교하면, 아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1921~1930년간의 각 전매품의 세입

연도	담배(원, (%))	인삼	소금	아편류 마약	합계
1921	13,550,940 (80%)	2,102,729 (12.4%)	1,161,775 (6.9%)	121,779 (0.7%)	16,937,223
1924	20,676,473 (86.4%)	2,152,406 (9%)	1,053,720 (4.4%)	53,490 (0.2%)	23,936,089
1927	32,566,146 (89.9%)	2,443,840 (6.7%)	1,220,242 (3.4%)		36,230,228
1930	32,763,787 (84.9%)	2,449,463 (6.3%)	3,164,087 (8.2%)	198,270 (0.5%)	38,575,607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1921·1924·1927·1930.

※ 1925~1928년 동안 아편류 마약은 전매국이 아닌 경무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1927년의 아편류 마약 부분은 공란임.

※ 금액의 경우 원(圓) 단위만 표기했음.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했음. 따라서 1930년 비율의 경우, 0.1%의 오차가 있음.

<표 7>과 같이 담배는 다른 전매품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입 비율 순위는 담배, 인삼, 소금, 아편류 마약 순이다. 아편류 마약은 다른 전매품에 비하면 세입이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아편류 마약 중독은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가정의 붕괴 등을 유발할 수 있었기에 식민통치에 악영향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로서는 아편류 마약 중독 문제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했다.⁷⁸⁾ 또한 아편류 마약을 남용하면 민족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중독될 수 있는 물질이었다.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잉여 아편이 생산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재정확보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양귀비가 재배되었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 또한 일제는 1925년에 아편 흡음을 폐지하고자 하는 제2차 국제 아편 협약에 조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귀비 재배 구역과 면적을 확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⁷⁹⁾

그러나 경기도와 강원도, 함경도에서는 양귀비 재배 구역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중 함경도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재배 인원·규모·수확량은 수 배 이상 차이 났으며 식민지 조선의 아편 성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의 양귀비 재배 구역이 폐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77) 박찬승 외 3명 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上, 민속원, 2018, 477~480쪽.

78) 朝鮮總督府, 『朝鮮總攬』, 1933, 753쪽.

79) 「阿片條約公式調印」, 『東亞日報』, 1925.02.13.

하고 함경도가 계속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유지된 배경으로는 먼저, 함경도의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함경도 일대의 토질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사질양토로 구성된 곳도 존재했지만, 산맥이 많고, 평지가 적어 미개척된 곳이 많았고, 한랭한 기후 때문에 쌀 재배에는 식민지 조선 남부지역보다 어려웠다. 평지가 아닌 경사 지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감자와 귀리와 같은 밭작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⁸⁰⁾ 양귀비는 이러한 환경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식물이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성장기가 지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배법이나 유액 채취에 신경을 써준다면 양질의 모르핀 함량을 지닌 아편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잘 관리한 양귀비는 감자나 귀리보다 몇 배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⁸¹⁾

함경도 당국에서는 궁민 구제를 목적으로 빈민과 화전민에게 양귀비 재배 허가권을 줬다.⁸²⁾ 도 당국이나 경찰 당국에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방랑하는 이들을 정착시켜 양귀비 재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에 편했다. 특히, 화전민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보통 화전민들은 산림에 불을 지른 다음에 정착해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대부분 국유림에서 화전을 일궈는데 조선총독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국유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한 화전으로 산림이 파괴된다면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기 쉬웠다. 따라서 화전이 활발해질수록 조선총독부가 필요로 하는 목재 수급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고 산림 개발 때 다수의 화전민이 남아있다면 이들과의 충돌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화전민들을 정착시켜 더 이상의 화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⁸³⁾ 또한 화전민들에 의한 양귀비 밀재배를 방지할 수 있었다.⁸⁴⁾

1925년 빈민의 일일 생활비가 약 5전이었는데⁸⁵⁾, 양귀비를 재배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1924년 함경남도의 양귀비 재배자 수는 552명이었고 아편 배상금은 총 18,980원이 교부되었다. 이를 단순 계산한다면 1인당 배상금은 약 34원이었다.⁸⁶⁾ 납부 아편의 모르핀 함량이 2% 미만이면 아편 배상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도 당국이 빈민과 화전민들에게 양귀비 재배권을 주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양귀비 재배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결과 함경도는 1920년대 동안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양귀비 재배 기술과 아편 생산 기술 숙련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함경도의 아편 성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 외에 1929년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농민 구제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했다. 이와 관련해 생계가 곤란한 지역의 농민, 빈민, 화전민

80) 함경도는 산간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협소하지만, 함흥평지와 영흥평지와 같은 일부 지역은 농작물 재배에 좋은 사질양토로 구성되어 있다(혼다 코스케 외 3명·김장규 외 2명 역,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1, 민속원, 2013 참고).

81) 「北朝鮮特許 罌粟栽培와 阿片製造法(李友山)」, 『東亞日報』, 1934.01.13.

82) 「端川火田民 生活에 打擊」, 『朝鮮日報』, 1931.05.04. ; 「窮民救濟로 阿片栽培擴張 咸北道山地 帶에」, 『매일신보』, 1931.09.11. ; 도 당국이 빈민과 화전민들에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배경으로 당시 대공황의 여파와 거듭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점을 들 수 있다(박찬승 외 3명 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中, 민속원, 2018, 601쪽.).

83) 최병택, 「조선총독부의 화전 정리 사업」,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참고

84) 화전민들은 화전에 적합한 토지를 찾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초막을 짓고 1~2년 동안 담배나 양귀비를 심어 지력을 시험한 뒤, 지력이 적당하다 싶으면 가족을 데리고 와 화전을 일궈냈다(「朝鮮의 火田과 火田民의 生活 (十六) 火田의 開墾及 耕作法」, 『朝鮮日報』, 1931.04.09.).

85) 「土窟貧民=生活費五錢」, 『東亞日報』, 1925.04.01.

86)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4.

에게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게 허가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⁷⁾

그러나 함경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주민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다수의 조선인으로 구성된 함경남도 각 군 대표들이 주최한 도민대회(道民大會)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제로 구성된 사안을 들고, 도 당국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에 ‘양귀비 재배 금지 요구’도 있었다.⁸⁸⁾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양귀비 재배 금지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아편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것과 함경도가 양귀비 밀재배와 아편 밀거래로 만연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미뤄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독초’인 양귀비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널리 재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함경도가 일제시기 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주요한 아편 재배지의 위상을 유지한 점을 미뤄보면, 도민대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귀비 재배 구역이 유지되는 것은 관련 범죄를 불러왔다. 양귀비 재배 허가를 내줌으로써 아편 관련 범죄를 감소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허가 구역에서도 밀재배하는 자가 검거되었다. 먼저 양귀비 재배권 독점과 오해로 인한 주민들의 밀재배 사례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함경도 당국의 양귀비 재배 허가로 각지에서 빈민과 화전민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실상은 지역의 유력자들이 양귀비 재배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시 언론은 도 당국과 같은 양귀비 재배 면적 지정과 관련된 당국과 교체하는 자들에게만 재배권이 주어진다고 비판했다.⁸⁹⁾ 유력자들은 양귀비 재배권을 받으러 올라온 이들에게 재배권을 판매했다. 1년 경작권은 보통 7~8원이었으며 30원까지 판매되었다. 원래 양귀비 재배는 신청자 명부와 실제 재배자 신원이 일치해야만 했다. 양귀비 재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배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귀비 재배를 하기 위해 올라온 빈민과 화전민이 양귀비 재배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아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재배권을 구입하면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을 줄 알고 재배권을 구입해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수의 위반자가 발생했다. 함경남도 갑산군 동인면 양교리의 경우, 주민 100여 명이 모두 무허가 재배자로 검속(檢束)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길주와 명천 등지의 유이민인데, 재배권자로부터 0.3정보에 현금 30원씩 내고 가을에 물담배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귀비를 재배했다. 결국, 경찰 당국에 발각되어 검거됐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이들의 사정을 듣고 선처하도록 했다.⁹⁰⁾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양귀비 밀재배 사례를 들 수 있다. 양귀비 재배 허가자는 보통 아편 배상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그러나 아편 밀거래는 아편 배상금보다 높은 이득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았다.⁹¹⁾ 밀거래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아편 배상금의 배로 받을 수 있었다. 1932년의 사례를 보면 1인당 평균 아편 배상금은 78원이었다.⁹²⁾ 1934

87) 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中, 민속원, 2018, 601쪽.

88) 「威鏡南道々民大會」, 『朝鮮日報』, 1923.10.20. 양귀비 재배 반대에 대한 건을 발의했던 원종집(元鍾濬)은 함경남도 정평에서 3.1운동을 이끈 인사 중 한 명이었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청년회 활동을 했다. 아편류 마약 중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시 지식인들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양귀비가 자신의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다숨, 「일제 식민지시기 아편문제의 실태와 대응」,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을 참고할 것.

89) 「端川火田民生活에打擊」, 『朝鮮日報』, 1931.05.04. ; 「阿片許可非難」, 『朝鮮日報』, 1931.05.06.

90) 「阿片耕作權과 耕作者」, 『東亞日報』, 1931.10.25.

91) 「阿片密賣首魁 元山에서被捉」, 『朝鮮日報』, 1927.04.17.

92) 「威南道罌粟栽培成績」, 『每日新報』, 1932.08.31.

년에 검거된 양귀비 밀재배자의 진술에 따르면,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1관에 300원에 거래된다고 한다.⁹³⁾ 아편 배상금의 수배에 달했기에 양귀비 재배 허가를 얻어 재배하는 것보다 밀재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었다. 또한 함경도의 경우 대부분 산림지대로 이뤄져 양귀비를 밀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경찰 당국에서 밀재배지를 단속할 때도 있었지만 수목과 산의 경사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다. 즉, 경찰 당국이 산림지대에 산재한 밀재배지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만약 밀재배지를 그곳의 찾아내 양귀비를 모두 뽑아버려도 밀재배자들은 여러 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어서 문제없었다. 함경도는 아편 흡연 수요가 많은 중국과 인접해 수익을 얻기에 어렵지 않았다. 경찰 당국에 검거되더라도 아편 밀거래로 벌어들인 돈으로 벌금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혹은 동료 밀재배자가 대납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온 밀재배자는 계속 양귀비를 재배해나갔다.⁹⁴⁾

또한 양귀비 재배 허가자와 아편 밀매 조직과 연계되어 양귀비가 밀재배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군의 양귀비 재배 구역들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아편 밀매자가 고양군 양귀비 재배 허가자들과 접촉해 아편을 구했다. 재배 허가자들은 산림지대에서 허가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땅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아편을 생산했다. 경찰 당국에 압수된 아편만 7.5kg이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압수된 아편의 가격은 25,000원에 달했다고 한다.⁹⁵⁾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재배자 개인이나 브로커에 의해 식민지 조선 사회로 유통되었다. 중독자나 아편 흡연소(아편굴)로 밀매되었는데 1928년 경기도 고양군의 양귀비 재배 허가자가 연루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밀거래된 아편은 경기도와 개성의 아편 흡연소로 분배되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유통되었는데 경성 아편 브로커의 손을 거쳐 만주로 밀매되었다.⁹⁶⁾

3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1920~193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구역은 식민지 조선 전체에 걸쳐 있었지만,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원인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배자들의 이탈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전매국과 도 당국의 미흡한 양귀비 재배 지도법 보급 정책과 아편류 마약이 전매 수입보다 단속을 목적으로 했기에 양귀비 재배 구역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양귀비 재배 구역을 계속 해제해나갔고, 결국 1931년의 양귀비 재배 구역은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만 남았다. 이중 함경도는 식민지 조선의 아편 함경도는 보통작물보다 양귀비를 재배해 이익을 얻는 것이 더 나왔기에 조선 말기부터 밀재배 되곤 했다. 조선총독부는 함경도를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해 함경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아편 배상금을 받으며 양귀비 재배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함경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증가했다.

그러나 함경도뿐만 아니라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었던 구역 내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통제

93) 「警察力미치지 못하는 國境密林地帶에 營속갓 밀경하는 악도본거 今後斷乎掃蕩할터」, 『每日新報』, 1934.06.17. ; 밀매 아편의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다른데, 1933년에는 1관에 500원이었다 (「下碣署管內에 罌粟栽培面積 四十三萬坪에 百四十貫收穫 換算하면 二萬八千圓」, 『每日新報』, 1933.09.05.).

94) 「咸南各地에 罌粟密作者激增 原因은 火田耕作禁止 道當局防止에 腐心」, 『每日新報』, 1927.11.13.

95) 「現場에서押收된것만 價格二萬五千圓」, 『朝鮮日報』, 1927.07.28. ; 「許可幾倍以上 營속각을 재배 尹某犯罪事實」, 『東亞日報』, 1927.07.31.

96) 「鴉片煙問題」, 『朝鮮日報』, 1927.08.06.

범위 밖에서 여전히 양귀비를 밀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편 배상금보다 밀거래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제 범위 안에서도 양귀비 재배권 분배 문제와 밀재배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즉, 양귀비 재배 구역은 허가 구역과 밀재배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아편 관련 범죄 감소를 목적으로 지정한 양귀비 재배 구역에서는 양귀비 밀재배와 같은 문제가 여전했고, 재배 허가자에 의한 밀재배도 단속해야 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총독부는 밀재배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밀재배자나 밀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조선아편취체령」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검거되었을 때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며, 재배 허가자에 의한 밀재배로 검거되었다면 200원 이하 과료나 벌금에 처했다. 앞서 보았듯이 벌금은 아편 밀거래로 벌어들인 돈으로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아편취체령」이 개정되는 과정에도 벌금과 과료에 대한 항목은 변함없었다. 단지 1930년 6월 20일 개정안에 양귀비 재배 무허가자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형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구역 지정에 대한 오판과 근본적인 양귀비 재배 통제 정책의 미비함은 결국 함경도 등 재배 구역에서 양귀비 밀재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밀재배된 양귀비는 아편으로 제조되어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으로 유통되어 중독자들을 낳았다. 한편, 1920~1930년대 초반 동안 함경도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이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부터는 양귀비 재배 규모가 급격히 상승했고, 일제가 필요로 한 아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3. 1930~1940년대 양귀비 재배 확대

1) 함경도에서의 양귀비 재배 면적 확대와 아편 수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재배 구역은 여러 요인에 의해 계속해서 축소되었다. 결국 1931년에 이르면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 함경도의 양귀비 재배 면적, 납부 인원, 수납량은 다른 양귀비 재배 구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2장 3절에서 살펴봤듯이 함경도 당국에서는 ‘국민 구제’를 목적으로 빈민과 화전민들에게 양귀비 재배권을 부여했다. 양귀비의 특성상 함경도에서도 재배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양귀비 재배 면적과 재배자 수, 아편 수납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33년에 이르면 함경도 당국의 주도 아래 양귀비 재배 면적 확대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물론 양귀비 재배 면적 결정과 허가는 도 당국에서 맡은 업무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귀비 재배 관련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기와는 달리 1930년대 중반기로 들어서면 함경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함흥] 쇼와(昭和) 6년(1931년) 함남도내 양귀비 재배 성적은 ▲허가 면적 650정보에 대하여 ▲수납품 296.3kg ▲96,000원인데 ▲재배호수는 1,217호 ▲1호 평균 78원 ▲최고 894원 ▲최저 8원 ▲1반보 평균 18원이라는 양호한 성적에 보아도 당국에서는 양귀비 재배가 현재 피폐한 산지 농촌 구제에 가장 적절한 큰 방책이라는 견지로서 내년도 재배 면적을 확장하려고 본부(本府)에 교섭 중인데 확장이 실현되는 날에는 견지로서 내년도 재배 면적을 확장하려고 본부에 교섭 중인데[밀줄은 필자] 확장이 실현되는 날에는 피폐 절정의 산지 농촌은 다소 활기를 띠듯하다.⁹⁷⁾

(나) [나남] 즉, 보고한 바와 같이 양귀비 경작은 함북도 농촌 경제 진흥의 유일한 양책으로 도 당국에서는 수년 내 그 재배 방법에 대하여 각방으로 조사·연구를 계속해 금년도부터는 경작계를 조직하여 지도 장려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차츰 진행하던 중 작년까지 경작을 허가하지 않았던 나남서, 부령서 두 관내에도 75,000정보의 경작을 허가하여 철저히 지도를 행하리라 한다.⁹⁸⁾

위에서 인용된 기사는 각각 함경남도 당국의 양귀비 재배 면적 확장 교섭과 함경북도 당

97) “[咸興] 昭和六年咸南道内罂粟栽培成績은▲許可面積百九十五萬坪에對하여▲收納品四七九貫▲九萬六千圓인데▲栽培戶數는一千二百七十七戶▲一戶平均七十八圓▲最高八百九十四圓▲最低八圓▲一反步平均十八圓이라는良好한成績에鑑하여道當局에서는罂粟栽培가目下 疲弊한山地農村救濟에最切한一大方策이라는見地로서來年度栽培面積을擴張하려고本府에交渉中인데擴張이實現되는날에는見地로서來年度栽培面積을擴張하려고本府에交渉中인데擴張이實現되는날에는疲弊絶頂의山地農村은多少活氣를 띄울듯하다(「咸南道罂粟栽培成績」, 『每日新報』, 1932.08.31.)”

98) “[羅南] 卽報한바와가티阿片耕作은咸北道農村經濟振興의唯一한良策으로道當局에서는數年來그栽培方法에對하여各方으로調査研究.繼續하던바今年度부터는耕作契를 組織하여指導獎勵計劃을樹立하고目下着々進行하든中昨年까지耕作을許치안엇든羅南署,富寧署兩管内에도七萬五千町步의耕作許하여徹底히指導를行하리라한다(「咸北道阿片栽培 指導計劃樹立 羅南, 富寧兩署管内도許可 農村經濟緩和策」, 『每日新報』, 1933.04.13.)” ; 해당 신문 기사에는 75,000정보의 땅에 양귀비 재배를 허가하겠다고 되어있으나, 당시 양귀비 재배 면적 한도는 2,560정보였다. 이는 기자가 단위나 숫자를 잘못 기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의 양귀비 재배 면적 확장 및 재배 전 사전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는 1932년도에 발행된 신문 기사로 작년인 1931년의 함경남도 양귀비 재배 성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양귀비 재배 농가 1호 평균 아편 배상금이 70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내년인 1933년⁹⁹⁾에 전매국¹⁰⁰⁾과 교섭하여 도내 양귀비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나)의 경우에도 함경남도처럼 함경북도 당국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방책으로 인지하고, 양귀비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양귀비 재배 면적을 확장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양귀비 재배 시행에 앞서 각종 재배법 조사와 양귀비 재배를 장려할 경작계 조직계획을 수립하여, 양귀비 재배 전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양귀비 재배지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양귀비 재배 구역 단위였던 면에서 도로 변경했던 1922년 4월의 상황과는 대조된다. 다음의 <표 8>과 <그림 2>는 함경도와 나머지 지역 간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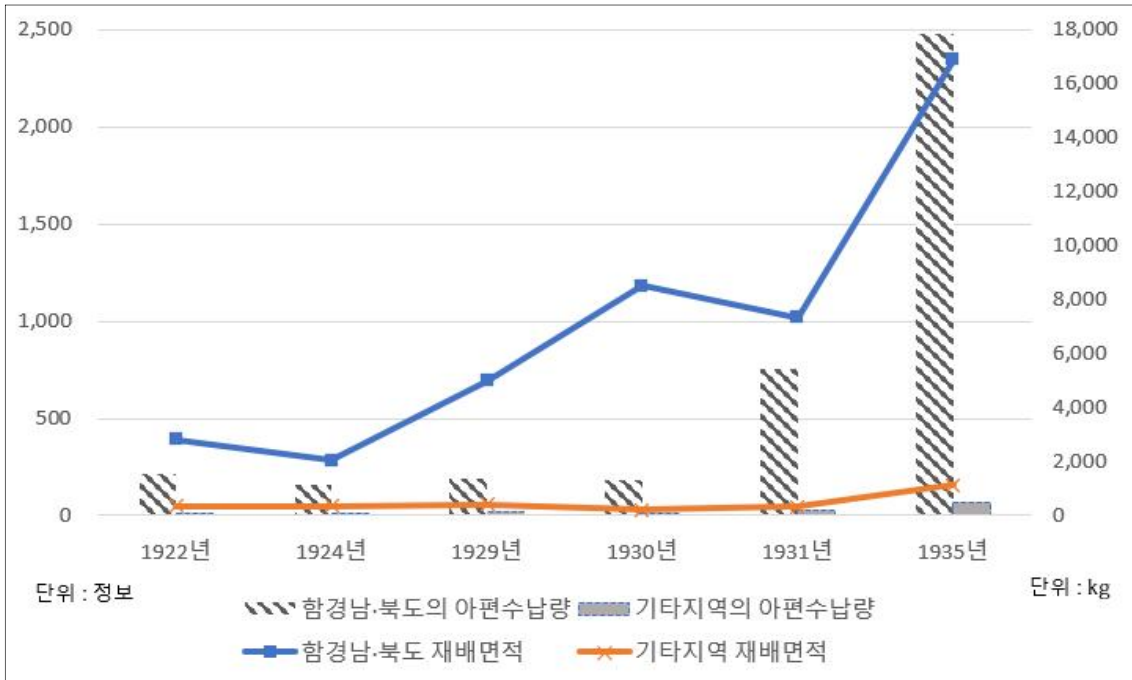
<표 8> 연도별 함경도, 기타지역과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 비교

연도/지역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함경도		기타지역	
	재배 면적(정보)	아편 수납량(kg)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1922년	389.3	1,563.6	47.4	79.3
1924년	285.1	1,118.3	48.6	63.6
1929년	693.7	1,360.1	59.2	140.5
1930년	1,181.7	1,334.4	28.7	65.5
1931년	1,019	5,439.4	43.5	214.7
1935년	2,346.5	17,862	155	486.4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4·1929·1930·1931·1935.

99) 신문이 발행된 1932년 기준이다. 신문 기사의 날짜인 8월 31일은 양귀비 농가에서 생산된 아편을 수납하는 시기이며, 전매국의 성분 분석과 아편 배상금 교부 단계를 앞둔 단계다.

100) 양귀비 재배 면적에 관한 사항은 도 당국의 업무지만, 전매국과 합의하게 되어있다(《부록 2》참고).



<그림 2> 연도별 함경도 및 기타지역에서의 아편 성적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2·1924·1929·1930·1931·1935.

- ※ 기타지역은 1922년에는 경기·전북·황해·강원도. 1924년 경기·황해도, 1929년 경기·강원도, 1930년 경기·강원도, 1931년 경기·경남·강원도, 1935년 경기·강원도.
- ※ 1925~1928년은 아편 사무가 전매국이 아닌 경무국 관할이었기 때문에 위의 조선총독부 전매국 통계에서 누락되었음.
- ※ 1932~1934년의 통계에는 지역별 아편 수납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면적은 그렇지 않아서 표기하지 않았음.

<표 8>과 <그림 2>를 보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아편 수납량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이 증가했지만,¹⁰¹⁾ 함경도의 경우 1924년에 약 285정보였던 양귀비 재배 면적이 1929년에 2배 이상인 약 693정보로 증가해도 아편 수납량은 192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2장 3절에서 다뤘듯이 아편 가격 하락 문제도 있었고, 양귀비 재배 기술의 미비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또, 1929년에는 양귀비 개화기와 유액 채취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유액 분비가 적었다고 한다.¹⁰²⁾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은 급증하기 시작한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5년의 함경도, 기타지역 통계와 1931년의 것을 비교해보면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 두 항목 모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함경도는 양귀비 재배 면적은 2배, 아편 수납량은 3배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식민지 조선산 아편의 수출처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은 아편 흡연 문화가 비교적 최근에 유입되었기 때문에¹⁰³⁾

101) 1929년의 기타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다. 총 납부 아편의 양은 140.5kg으로 경기도에서 32.8kg, 강원도에서 107.7kg의 아편이 수납되었다. 즉, 각 아편 납부 비율은 경기도 23%, 강원도 76.7%를 차지하고 있다.

102)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29, 241쪽.

일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소비가 많지는 않았다. 즉,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양귀비 재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었다. 조선총독부로서는 단속에 목적을 두고 양귀비를 재배해야 했고, 재고 아편에 대한 처분이 필요했다. 마침 1933년 4월 5일, 일본 내무성에서 개최(開會)한 아편 위원회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 재고품 처리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결과, 식민지 조선의 아편은 관동주와 대만, 만주국으로 수출해 전매 아편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다.¹⁰⁴⁾

세 지역은 아편 소비가 식민지 조선보다 많았던 지역이었다. 관동주와 대만은 식민지 조선보다 면적은 작아도 중독자 수의 비율은 높았다. 관동주의 등록 중독자 수는 1922년 2월에는 28,211명이었고, 그해 8월에는 34,546명이었다. 당시 관동주의 중국인 638,133명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4.4%와 5.4%의 인구가 중독자였다.¹⁰⁵⁾ 대만 또한 중독자 수가 1920년 인구 약 376만 명 중 48,012명으로 비율은 약 1.3%였다. 이에 반해 식민지 조선은 1929년 등록 중독자가 5,000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0.025%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 전매국 세입에서 아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만은 아편 수익이 거의 없었던 식민지 조선의 전매와 달리 아편이 전매 수익의 상당수를 차지했었던 시기도 있었다.¹⁰⁶⁾

만주국의 경우, 만주 전체의 중독자 수는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0만 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해 소비되는 아편의 양은 연간 1,000t에 달했다.¹⁰⁷⁾ 또한 만주국 수립 이전에는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양귀비 지배를 해왔다. 군벌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나 주민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양귀비 재배를 묵인해줬다. 이는 만주국 내에 양귀비 밀재배지가 널리 존재하고 있음의 의미였다. 만주국 정부도 아편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아편 확보를 위해 양귀비 재배 구역을 지정했다. 전국의 아편 수요를 고려하여 재배 구역을 설정했다. 1933년에는 열하성(熱河省)과 흥안성(興安省), 길림성(吉林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밀재배 문제로 예상한 만큼의 아편이 수납되지 않았으나, 밀재배지 단속과 압록강·두만강 인근 한인 밀집 거주지에 양귀비 재배 구역을 추가하면서 1934년에는 예상 아편 수납량의 97%에 가까운 344,424.5kg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했다. 그러나 1936년도 이후에는 비적(匪賊) 방지를 이유로 양귀비 재배 구역을 축소했다.¹⁰⁸⁾

103) 중국은 청나라 때, 서양 무역상에 의해 아편이 유입되어 아편 흡연이 문제 되었다. 이에 1729년에 옹정제(雍正帝)가 아편 흡연을 금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적어도 중국은 18세기에 아편 흡연 문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마틴부스·오희섭 역, 『아편,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수막새, 2004, 151쪽.).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조선시대 때, 아편 흡연 기구를 청나라에서 가져오다 검거된 역관 박희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할 때 비변사에서 “대저 아편이 어떤 요사스러운 약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備邊司謄錄』, 현종 14년(1848년) 5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개항기 이후에는 아편 흡연 문제를 두고 비판하는 문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국사편찬위원회, 「『독립신문』, 조선에 오는 청국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함」, 『사료 고증시대사』 20, 2019), 이를 통해 조선은 개항기 이후(19세기 중·후반)에 아편 흡연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보다 늦은 시기에 아편 흡연 문화가 확산되었다.

104)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555쪽.

105) 박강, 「關東州에서의 日本 阿片政策 : 阿片特許制度를 中心으로」, 『일본역사연구』 11, 일본사학회, 2000, 138~139쪽.

106) 문명기, 「대만, 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가"능력의 차이-」, 『史林』 0(52), 수선사학회, 2015 ; 권경선, 「근대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 이동 고찰 : 일본 제국 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5),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90쪽.

107)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19쪽.

108) 박강,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 한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함경도 당국은 아편 수출이 도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직접 양귀비 재배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여 재배법 연구나 경작계 조직 등을 실시했다. 국민 구제라는 목적을 들어 양귀비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해나갔다. 함경도에서 양귀비 재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보통작물의 2배에 달했으며, 감자와 귀리의 수배에 달한다고 한다.¹⁰⁹⁾ 물론 이러한 수치는 양귀비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 나올 수 있는 결과였다. 간혹 아편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2% 미만의 아편이 생산되거나,¹¹⁰⁾ 자연재해로 생육이 불량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때도 있었다.¹¹¹⁾ 그러나 양귀비는 국민과 화전민이 수익을 얻기에 매력적인 작물이었고 꾸준히 재배되었다.

함경도에서 생산된 아편의 모르핀 함량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전매사』 제3권에 따라 모르핀 함량 10% 이상의 아편을 양호한 아편이라고 본다면 1934년 함경남도 전체 납부 아편 7,639.2kg 중에서 약 88.1%인 6,734.6kg의 아편이 모르핀 함량 10% 이상이었다. 같은 해 함경북도 전체 3,496.7kg에서 77%에 해당하는 2,703.7kg의 아편이 모르핀 함량 10% 이상이었다. 1930년에 함경남도의 전체 아편 수납량 699.71kg 중 61.8%, 함경북도는 634.2kg 중 49.6%이 모르핀 함량 10% 이상의 아편이었던 것을 보면 모르핀 함량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4년에는 모르핀 함량 최고 23%에 달하는 아편이 처음 생산되었다.¹¹²⁾

1935년 관동주와 만주국으로 약 11,072kg의 아편이 수출되었다. 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의 5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다음 해인 1936년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한 27,305kg에서 96%에 달하는 26,305kg의 아편이 관동주와 만주국으로 수출되었다.¹¹³⁾ 1937년 당시 전매국장인 무네스에 순이치(棟居俊一)는 만주국과 협상해 아편 수출 규모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함경도에 양귀비 재배 면적으로 1,000정보를 확장해 수익을 늘릴 방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¹¹⁴⁾ 실제로 1,000정보만큼 확장되지 않았지만, 1936년 식민지 조선의 전체 양귀비 재배 면적은 2,467.9정보였는데 1937년에 2,706.7정보로 238.8정보만큼 확장되었다.

한편 1930년대의 양귀비 재배 면적 확대를 볼 때, 조선총독부가 초기에 자신들이 설정한 조건과 다르게 계속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아편취체령」 제정 당시 조선총독부는 아편 확산을 우려해 양귀비 재배 구역에서 철도 연선을 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참고.

109) 1936년 함경남도의 경우, 1단당 아편 배상금은 30여 원에 달했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36 ; 「咸南粟栽培好績」, 『朝鮮日報』, 1936.08.30.). 개인당 아편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시기는 다르지만, 1932년의 기사를 참고하면, 1호당 평균 78원, 최저 8원, 최고 894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咸南道罌粟栽培成績」, 『每日新報』, 1932.08.31).

110) 함경도에서는 아편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모르핀 함량 0~1%의 아편이 생산되기도 했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34.).

111) 「氣候不順으로 穀物飢饉凶作」, 『東亞日報』, 1933.08.05. ; 「업친데답치기! 旱害우에또雹災」, 『朝鮮日報』, 1936.07.11.

112) 1934년 함경남도에서 모르핀 함량 23%의 아편이 약 0.56kg 생산 되었다. 이는 당시 함경남도에서 생산된 아편 7,639.2kg 중에서 0.007%에 불과한 수치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年報』, 1934.). 극소량이라도 23%의 아편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식민지 조선(함경도)의 양귀비 재배 기술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후의 자료에서는 아편 성분을 상세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모르핀 함량 23%에 근접한 아편이 계속 생산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13)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323~324쪽.

114) 「專賣事業大擴充」, 『朝鮮日報』, 1937.02.02.

함경도는 ‘북선 개발’에 따라 철도뿐만 아니라 산림·신항·도시 개발과 함께 식민지 조선 북부지역 개척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인구 집중을 의미했는데, 양귀비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이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양귀비 재배 구역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당국의 통제망 밖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를 밀재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식민지 조선이나 중국, 만주국 일대로 아편이 유통되었다. 성진군과 길주군에는 아편 밀매단이 양귀비를 밀재배하여 만주국 안동현 등지로 무게 52.5kg에 6,000~7,000원 상당의 아편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되었다.¹¹⁵⁾ 반대로 만주국의 양귀비 재배 정책으로 식민지 조선에 아편이 몰래 유입된 사례도 있었다. 만주국 정부가 200원 이내의 아편은 자유 거래에 맡긴다고 하자, 장백현의 조선인 양귀비 재배자들이 뗏목에 아편을 넣어 압록강으로 흘러보낸 뒤 밀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평안북도 경찰 당국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며, 이미 밀수되었을 아편의 위치를 수색하는 사례도 있었다.¹¹⁶⁾

과거 양귀비를 재배했던 경험과 도 당국의 개입으로 함경도는 1920년대에 비해 아편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양귀비 개화기인 6월에 이르면 함경도에서는 백색의 양귀비꽃이 만발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¹¹⁷⁾ 이처럼 함경도는 식민지 조선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신문 기사에서는 함경남도를 ‘아편 왕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¹¹⁸⁾ 함경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편 관련 범죄로 외부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모습을 두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나, 지역과 주민들의 생계 구제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다. 결국, 함경도가 식민지 조선 아편의 대부분을 생산했고, 함경도에서 생산된 아편 대부분이 관동주와 대만, 만주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함경도가 일제의 아편 공급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중일전쟁과 양귀비 재배 구역 확장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는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했다.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 본토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선포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8년 5월 10일에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국가총동원법」 제2조 3항에서는 총동원 물자를 명시했는데 의약품들도 총동원 물자에 포함되었다.¹¹⁹⁾ 이때 아편류 마약도 전시 물자로 분류되어 전쟁터로 공급되었다. 진통효과가 뛰어난 모르핀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마와 군견과 같은 동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었다.¹²⁰⁾ 아편류 마약은 군수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면서 새로운 영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중독자들도 일제에 편입되었다. 중

115) 「列車乘務員과符同大量阿片을密輸」, 『朝鮮日報』, 1936.09.29.

116) 「栽培獎勵한阿片을朝鮮에密輸까지獎勵?」, 『東亞日報』, 1935.10.16.

117) 「全朝鮮 鐵道豫定線 踏査 (四) 火田民의 血痕點點 雪白의 罌粟花만 滿發 財産은 뚝배기 珍味는 풀 한 줌 無夏國의 暗澹한 情調」, 『東亞日報』, 1936.08.10.

118) 「(咸鏡南道)阿片王國의 咸南今年는 罌粟栽培를擴大 / 關東省への供給を日次して千數百町歩の面積」, 『朝鮮新聞』, 1933.04.02.

119) “三. 國家總動員上必要ナル醫藥品, 醫療機械器具ノ他ノ衛生用物資及家畜衛生用物資(「國家總動員法施行期日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38.05.10.)”

120)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28쪽.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매사업에는 아편이 필요했다.¹²¹⁾ 아편뿐만 아니라, 양귀비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양귀비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 도료, 식용, 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²²⁾ 이러한 아편류 마약의 수요 증가와 양귀비 씨앗의 새로운 용도 개발은 양귀비 재배 구역 확대를 불러왔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1931년에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네 지역만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남았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양귀비 재배 구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1938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가 양귀비 재배지역이 된 이래로 1939년에는 충청북도와 평안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다.¹²³⁾ 1939년에 총 6,667정보에 달하는 면적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다. 1937년과 1938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 각각 2,706.7정보, 5,048.3정보였음을 보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22년 4월 29일에 고시된 「앵속재배구역중개정」에 의해 양귀비 재배 구역이 도 단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¹²⁴⁾ <표 9>는 1937년 이후 양귀비 재배 지역 목록이다.

<표 9> 1937년 이후 양귀비 재배 지역 목록

순번	재배 구역	재배 지정 연도	비고
1	함경남도 정평군	1938	1938년 재배 허가, 면적 4정보
2	강원도 횡성군	1938	1938년 재배 면적 3정보 2단보 56정보 확장 예정
3	강원도 회양군	1939	회양, 하북, 간곡면에서 재배 예정
4	강원도 정선군	1939	1939년 재배 면적 1정보(부인회 의탁) 1940년 예정 재배 면적 150정보
5	경기도 포천군	1940	1940년 예정 재배 면적 20정보
6	경상북도 풍기군	1940	예정 경작 면적 30정보
7	경상남도 울산군	1940	언양면 어음리(於音里), 직동리(直洞里) 1940년 예정 재배 면적 8정보

출전 : 「定平의 첫 試驗인 阿片栽培成績良好 一段步에 七十圓의 收益」, 『東亞日報』, 1938.07.06. ; 「橫城阿片栽培 耕地面積擴張」, 『每日新報』, 1938.12.18. ; 「淮陽地方에도 罌粟栽培獎勵」, 『每日新報』, 1939.03.29. ; 「旌善도 阿片栽培」, 『每日新報』, 1939.08.11. ; 「抱川에 罌粟栽培 田地 二十町步 選定」, 『每日新報』, 1939.12.22. ; 「罌粟耕作指定 耕作豫定量?町步(豊基)」, 『東亞日報』, 1940.01.13. ; 「先づ初年度八町餘ケシを栽培」, 『釜山日報』, 1940.12.08.

<표 9>에 나온 지역들은 모두 1938년 이후, 당시 신문 기사에 언급된 양귀비 재배 지역

121) 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學書房, 2002, 216~217쪽.

122) 「罌粟의 果實로 二十萬圓收益」, 『朝鮮日報』, 1938.04.02.

123) 大藏省印刷局, 『官報』, 1938.12.26.

124)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 주민의 경험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양귀비 재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08년에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편찬한 『地谷面誌』에는 1942년에 지곡면의 화천2리, 장현1리, 산성1리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지곡면지 편찬위원회, 『地谷面誌』, 지곡면, 2008.). 물론 해당 본문이 근거하고 있는 문헌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면이 한때 「罌粟栽培區域指定中改正」(1921.01.28.)에 의해 재배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점을 보면 지곡면에서도 1940년대에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사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다. 양귀비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이라서 먼저 시험 재배 후 재배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양귀비 주재배지인 함경남도의 정평군은 1938년에 처음으로 양귀비 재배 허가가 났다고 한다.¹²⁵⁾ 경상남도도 거창, 산청, 함양, 함천군에서만 양귀비가 재배되었기에 울산군을 신규 재배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도 1939년 이전에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 정리하면 위의 표의 함경남도 정평군, 경상남도 울산군, 경상북도 풍기군은 양귀비 신규 재배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강원도의 횡성군, 회양군, 정선군과 경기도의 포천군은 신규 재배지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양귀비 재배 구역이 도 단위로 지정된 1922년 4월 이전 재배 구역 목록을 보면 횡성군, 회양군, 정선군, 포천군은 양귀비 재배 구역에 속하지 않았다. 1922년 이후에는 도 단위로 재배 구역이 지정되었기에 군 단위로 양귀비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1938년 이전에 이미 양귀비가 재배되었을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 지정 재배 구역뿐만 아니라,¹²⁶⁾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농장에서도 양귀비가 재배되었다. 1938년 10월 14일에 조선총독부 전매국 제조 장관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방문해 양귀비 재배 의뢰를 맡겼다. 그동안 양귀비가 재배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 남부지역에 양귀비 재배를 재개해 아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938에 김해, 밀양, 고성, 안성 등 네 지역에서 총 100정보의 땅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인 1939년에는 부산과 대구, 목포, 이리, 대전, 경성, 사리원 등에 걸쳐 총 485정보의 땅에서 양귀비를 재배했다.¹²⁷⁾

양귀비 재배 구역과 재배 면적을 확장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편 증산을 위한 정책도 이뤄졌다. 물론 만주사변 이후 함경도 당국에서 빈민과 화전민 구제 목적으로 양귀비 재배 허가를 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일전쟁 이전에도 쓰이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총동원령」이 시행된 중일전쟁 이후의 경우 함경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양귀비 재배 구역은 전국에 걸쳐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양귀비 재배지는 1반당 1kg의 아편을 수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앵속조합을 조직하도록 하고, 앵속조합에 매년 125,975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계획했다. 각 앵속조합에 기술지도원을 파견하여 양귀비 재배 및 아편 제조법 기술 지도를 하도록 했다. 앵속조합은 재배자들이 아편 관련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귀비 재배에 필요한 비료나 아편 생산용 물품은 조합내 재배자들이 공동 구매하도록 했다.¹²⁸⁾ 또한 양귀비 재배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이뤄졌다. 높은 아편 배상금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며, 양귀비 재배 면적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었다.¹²⁹⁾ 사리원 경찰서의 경우, 양귀비 우량 재배자를 표창하여 재배자들이 양귀비 재배에 힘쓰도록 했다.¹³⁰⁾

그러나 양귀비 재배 구역과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음에도 아편 생산 성적은 조선총독부가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동원체제라는 특수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 쌀

125) “함남 정평군 고산면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아편을 재배시켰는데…(「定平의 첫 試驗인 阿片栽培成績良好 一段步에 七十圓의 收益」, 『동아일보』, 1938.07.07.)”

126)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외에 촉탁 경작자에 의한 양귀비 재배도 있었다고 하나(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1939, 235쪽.), 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127)樋口雄一, 『植民地支配下の朝鮮農民』, 社會評論社, 2020, 128~130쪽.

128)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 『重要農林産物増産計畫の概要』, 1943, 97~98쪽.

129) 「定平의 첫 試驗인 阿片栽培成績良好 一段步에 七十圓의 收益」, 『東亞日報』, 1938.07.07.

130) 「罌粟優良耕作人表彰」, 『每日新報』, 1940.12.24.

과 같은 보통작물과의 재배 구역 조절¹³¹⁾과 양귀비 재배 인력 유출 등을 추측할 수 있으나, 사료 부족으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재배 기술의 미숙과 자연재해 등을 들어 전시동원체제 양귀비 재배 정책의 실태를 <표 10>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10> 1938~1939년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 아편 수납량, 아편 납부 인원

도명 / 연도	1938년			1939년		
	재배 면적(정보)	수납량(kg)	납부 인원	재배 면적	수납량	납부 인원
경기도				14.6	28.2	5
충청남도				13.2	28.1	73
전라북도				10.1	42.1	43
경상북도				68.9	185.4	513
경상남도				55.9	119.5	275
황해도	0.5	1.6	5	130.4	342.9	691
평안남도	0.5	0.9	5	28.4	86.7	227
강원도	100	279	616	978.5	2,615.2	8,323
함경남도	3,302.3	16,604.1	17,734	3,505	12,114.1	17,337
함경북도	1,645	10,826.7	12,310	1,845	11,139.9	13,191
합계	5,048.3	27,712.3	30,670	6,650	26,702.1	40,678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1938·1939.

* 1939년 전라남도는 재배 면적이 17.5정보였지만, 납부량이 전무하여 기재되지 않았다. 즉, 1939년의 실제 양귀비 재배 면적은 6,667.5정보다.

위의 <표 10>은 전시동원체제기인 1938년과 1939년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 납부 인원을 비교한 것이다. 1939년에는 새로운 재배 구역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재배 구역도 면적이 확장되었다.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619.2정보 증가했다. 그러나 1939년에 재배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수납량은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자연재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함경남도의 경우 양귀비 재배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수납량은 약 27% 감소했다. 함경남도가 일제시기 동안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고, 식민지 조선 내에서 생산되는 아편 대부분을 전매국에 납부했던 사실을 보면 기술 문제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함경남도의 아편 수납량 감소 원인은 기술의 미숙련보다 당시 1939년의 대가뭍으로 인한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³²⁾ 당시 봄철의 대가뭍은 여러 농작물 생산에 타격을 줬는데, 양귀비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양귀비 재배 미숙련자와 관련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표 10>은 1939년 대가뭍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급격한 납부 인원 증가세를

131) 『朝鮮專賣史』第3卷 등의 자료에서 양귀비 재배 구역은 특용작물과 보통작물의 재배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시동원체제 동안 일본 본토의 농림성에서 쌀과 보리 증산을 위해 「農地調整令」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생성이 관리하고 있던 양귀비 재배 구역과 농림성의 쌀·보리 증산 계획이 충돌하자 농림성과 후생성은 서로 협의 하여 양귀비 재배 구역을 조정했다고 한다(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28쪽.).

132) 「南,北各地의 旱災로 煙草 罌粟은 減收 소금만은 五割增産」, 『東亞日報』, 1939.09.13.

본다면 양귀비 재배 미숙련자들도 양귀비 재배에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제시기 동안 양귀비 재배지가 아니었던 경상북도는 513명의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양귀비를 오랫동안 재배해왔던 지역의 재배자를 이주시키지 않은 이상 양질의 아편을 생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양귀비 재배지로 유명한 함경도는 1931년에 들어서야 모르핀 함량이 20%에 달하는 아편을 소량이나마 생산할 수 있었다.¹³³⁾ 또한 강원도의 급격한 증가세도 주목할 만하다. 재배 면적은 1938년에 100정보였다면, 1939년에는 9배 이상 증가한 약 978정보에 달했다. 재배 인원도 1938년에 616명이었다면 다음 해에는 8,32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재배 규모 확장으로 양질의 아편 확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강원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고, 화전민들이 양귀비와 같은 식물을 심어 생계를 유지했던 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 보인다.¹³⁴⁾ 1943년에 발간된 『대동아의 특수자원』에서도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및 유액 채취 기술이 일본 본토보다 아직 미숙하다고 평했다.¹³⁵⁾ 또한 같은 연도에 간행된 『중요농산물증산계획의 개요(重要農林産物増産計畫の概要)』를 보면 1반보당 1kg을 수확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¹³⁶⁾ 이는 아직 식민지 조선 대부분 지역이 양질의 아편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전매국 관리 양귀비 재배 구역뿐만 아니라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농장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39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가뭄과 전매국의 지도 부족 등으로 양귀비 재배 성적이 매우 불량하다고 한다. 또한 1941년 서선농장(西鮮農場)의 보고에 따르면 해충과 병해로 인해 양귀비 재배 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며, 다른 작물을 임시로 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¹³⁷⁾

따라서 전쟁 중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증산 계획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보인다. 즉, 강제적인 재배 인원과 재배 면적 확장으로 아편 증산을 피하고자 했으나 양귀비 재배 기술에 숙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친다면 양귀비 재배 구역 및 면적은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양귀비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아편류 마약의 원료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재배되었다. 전선으로 공급되기도 했고, 다른 영역으로도 수출되었다. <표 11>은 1940년에서 1944년 사이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량,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133) 1923년에 수납된 제약용 아편의 무게는 약 1,351.5kg에 달했는데, 최고 모르핀 함량이 20%였다. 이 중 모르핀 함량 20%에 해당하는 아편은 2.3kg으로 전체 수납량의 0.1%를 차지했다. 이 아편이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없기에 제외했고, 이후로 모르핀 함량 20% 이상의 아편은 생산되지 않다고 1930년대에 다시 생산된다.

134) 강원도의 급격한 양귀비 재배자 증가는 화전민 동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강원도는 함경도와 더불어 많은 수의 화전민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삼림자원 보존을 위해 꾸준히 화전 정리 사업을 시행해왔다. 1937년 이후에는 자원 확보와 국토 보안의 이유로 화전 정리사업은 주요 사업이 되었다(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下, 민속원, 2018, 1089~1090쪽.).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강원도 일대의 화전민들에 대한 지도 활동과 지하자원 확보 등 노동력 보충을 위해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당시 양귀비 재배에 화전민들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不足勞働者補充策 火田民을動員計畫」, 『朝鮮日報』, 1938.12.15. ; 「時急한火田民의指導」, 『東亞日報』, 1939.05.02.).

135)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13쪽.

136)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 『重要農林産物増産計畫の概要』, 1943, 97~98쪽.

137) 樋口雄一, 『植民地支配下の朝鮮農民』, 社會評論社, 2020, 132~135쪽.

<표 11> 1940~1944년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수납 및 수출량

연도	양귀비 재배 면적 (정보)	아편 수납량 (kg)	아편 수출량(kg)			
			관동주	만주국	대만	아편 수출량 합계
1940년	7,486.9	32,929	12,498	8,501	7,315	28,314
1941년	8,673.7	30,739	20,110	17,008	11,473	48,591
1942년	6,855.7	25,971	16,839	11,032	8,139	36,010
1943년	7,717.8	39,433	17,418	8,377	4,777	30,572
1944년	7,842.8	37,811	12,000			12,000

출전 :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323~324쪽.에서 재인용

1940년대의 양귀비 재배 인원과¹³⁸⁾ 양귀비가 생산된 지역과 그 품질은 알 수 없지만 1939년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비교하면 최소 2.8%(1942년)에서 최대 30%(1941년) 증가했다. 그렇지만 재배 면적 대비 아편 수납량 비율은 1938년과 1937년과 비슷했다. 즉, 1935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인 약 2,501.4정보에 18,348kg의 아편을 수납한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중일전쟁 이전보다 수확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동주와 만주국 대만으로 아편은 계속 수출되었다. 수출량은 대체로 관동주와 만주국 대만 순이었다. 특히, 1940년에 대만의 수입 아편 100%인 7,315kg은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이었다.¹³⁹⁾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일제내 다른 영역에서 전매품으로 이용되거나, 모르핀으로 제조되어 전선으로 공급되었다. 해방 직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는 양귀비가 계속 재배되었다.

전쟁 말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 흔적은 해방 뒤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신문 기사에는 “양귀비 재배지인 강원, 경상북 양도에 금년도 재배를 전반적으로 중지시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¹⁴⁰⁾ 즉, 38선 이남은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역이 양귀비 재배 구역이었으나, 강원도와 경상도만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남아 양귀비가 계속 재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매국 창고에 남겨진 아편을 빼돌리려던 일본인 관리, 조선인 밀매자 등이 미군정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¹⁴¹⁾ 「조선아편취체령」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을 전매국으로 납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당시 전매국 창고에는 식민지 조선 각지에서 생산된 아편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다룬 해방 직후 양귀비 재배 금지 신문 기사와 전매국 아편 유출 사건을 종합하면 해방 직전까지 양귀비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재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8) 해방 직후 신문 기사에 따르면 미군정 조사 결과,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한다(「罌粟殼栽培禁止, 不遠間嚴密한 調査를 實施할터」, 『嶺南日報』, 1946.03.27.).

139) 구라하시 마사나오 박강 역, 『아편 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59쪽.

140) 「阿片栽培 全面的中止」, 『東亞日報』, 1947.06.25.

141) 조석연, 「한국 근현대 마약문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62~64쪽.

4. 맺음말

개항기에 조선 사회로 유입된 아편 흡연 문화로 인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 금지 대상이 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도 아편 확산을 우려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아편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조선총독부는 안정적인 아편 확보와 아편 유출 방지를 위해 1917년에 「양속재배취체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1919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아편취체령」을 제정하여 양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재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아편류 마약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중일전쟁에 이르러서는 평안북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의도대로 양귀비 재배 정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아편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양귀비 재배자 이탈과 재배 구역 축소를 불러왔다. 또한 식민지 조선은 일제시기에 양귀비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었기에 양귀비 재배 및 유액 채취 기술은 미숙련 상태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 일본 본토와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일본 본토의 아편 수납량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일본 본토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었고, 양귀비 재배 경험이 식민지 조선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함경도가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양질의 아편이 생산되었지만, 재배 구역으로 유지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에서 양질의 아편을 생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는 전시동원체제 때 양귀비 재배 구역을 전국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수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양귀비 재배 구역과 아편 수납량 문제뿐만 아니라 양귀비 밀재배도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속재배취체규칙」이 고시되었을 당시에는 법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소문이 돌았다. 그 결과 양귀비 재배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양귀비는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작물이었다. 경찰 당국에서 무허가 양귀비 재배자와 재배지를 단속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1919년에 「조선아편취체령」을 제정하여 양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밀재배는 여전했다.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으로 밀거래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함경도를 양귀비 재배 구역으로 지정해 밀재배 행위와 아편 밀거래와 같은 아편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자 했다. 지역 대표들은 양귀비 재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였으나 함경도 당국은 지역 경제 구제를 이유로 빈민·화전민에게 양귀비 재배권을 내려주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지역의 유력자들이 양귀비 재배권을 독점하고 빈민과 화전민에게 재배권을 매매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함경도의 자연환경과 밀거래 아편 가격이 아편 배상금보다 높았던 이유로 인해 양귀비는 계속 밀재배되었다. 아편 밀거래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검거되더라도 벌어들인 돈으로 형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양귀비 밀재배와 아편 밀거래를 방지하고자 따로 양귀비 재배 구역을 지정했으나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함경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경찰 당국의 감시망 밖에서 양귀비 밀재배지가 있었고, 양귀비 재배 허가자와 아편 밀매단의 공조로 아편이 밀거래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리하면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정책은 그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본토와 비교하면 재배 면적당 아편 수납량은 그리 높지 않았고, 밀재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양귀비 밀재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단지 양귀비 밀재배자들을 단속할 뿐이었는데, 밀재배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했다. 밀재배지에서 생산된 아편은 식민지 조선 내외부로 확산되어 아편 중독자들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양귀비 재배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갔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각 영역으로 아편을 공급 및 보충해주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 흔적은 현재에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방 직후의 기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귀비 재배 정책과 변동과정, 그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인식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일제시기 양귀비 재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용작물 재배 구역과 양귀비 재배 구역간의 상관관계, 식민지 조선의 양귀비 밀재배지 분포 현황과 재배 방법, 생산 아편의 거래 양상과 밀재배 검거 추이, 양귀비를 재배했던 지역 사회의 경험,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양귀비 재배 정책 성격 비교 등 양귀비 재배와 관련해서 밝혀야 할 주제들이 있다. 일제시기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면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간행한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 간행 자료, 일기장, 판결문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 속에서 양귀비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일제시기 마약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를 통해 일제시기의 사람들은 양귀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양귀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인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의 원료’와는 다른 시각으로 양귀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신문·잡지 및 자료

- 『世宗實錄地理志』 『憲宗實錄』 『高宗實錄』 『備邊司謄錄』
『東亞日報』 『每日新報』 『釜山日報』 『嶺南日報』 『朝鮮新聞』 『朝鮮日報』 『파이낸셜뉴스』
『別乾坤』
農民叢書, 『水田裏作物栽培法：有利經濟』, 米本書店, 1925.
二反長音藏, 『罌粟栽培及阿片製造法』, 1915.
大藏省印刷局, 『官報』
朝鮮副業獎勵會, 『朝鮮副業全書』, 1924.
滿鐵經濟調查會製5部, 『朝鮮阿片麻藥制度調查報告』, 1932.
日滿棉花協會朝鮮支部, 『朝鮮の棉花事情』, 1937.
朝鮮銀行調查部, 『朝鮮事情』, 192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朝鮮總覽』, 1933.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 『重要農林產物增産計畫の概要』, 1943.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佐藤弘, 『大東亞の特殊資源』, 大東亞出版株式會社, 1943.
波多腰節, 『(最新)藥用植物栽培法』, 丸山舎, 1940.

2. 단행본

- 강희안·이병훈 역,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2000.
倉橋正直, 『日本の阿片王, 二反長音藏その時代』, 共學書房, 2002.
구라하시 마사나오·박강 역,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고증시대사』 20, 2019(인터넷판).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9.
마틴부스·오희섭 역, 『아편,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수막새, 2004.
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上, 민속원, 2018.
_____,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中, 민속원, 2018.
_____,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下, 민속원, 2018.
지곡면지 편찬위원회, 『地谷面誌』, 지곡면, 2008.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역음, 『3·1운동 100주년 총서』 4, 휴머니스트, 2019.
합천군, 『陝川郡史』 1, 합천군, 2013(인터넷판).
樋口雄一, 『植民地支配下の朝鮮農民』, 社會評論社, 2020.

3. 연구논문

- 고태우,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0.
권경선, 「근대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 이동 고찰 :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5),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김승민, 「연구논문: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2(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 문명기, 「대만, 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가"능력의 차이-」, 『史林』 (0)52, 수선사학회, 2015.
-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 _____, 「關東州에서의 日本 阿片政策 : 阿片特許制度를 中心으로」 『일본역사연구』 11, 일본사학회, 2000.
- _____,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오미일, 「특집 : 정주와 이주사이의 동아시아;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魔窟”이미지의 정치성」,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정광중, 「일제시기 전매제하 인삼생산의 전개과정」, 『문화역사지리』 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5.
- 최병택, 「조선총독부의 화전 정리 사업」,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4. 학위논문

- 김다솜, 「일제시기 식민지시기 아편문제의 실태와 대응」,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미옥, 「朝鮮時代 地被植物에 관한 研究」,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은희, 「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예지, 「1910,20년대 조선총독부 아편정책과 성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조석연, 「한국 근현대 마약문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5. 연구보고서

-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연해주 불로치가 유적』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6. 웹 사이트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https://www.kbr.go.kr>)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https://snuherb.snu.ac.kr>)
- 일본국립국회도서관(<https://www.ndl.go.jp>)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
- 합천군청(<http://www.hc.go.kr>)

《부록》

<부록 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따른 양귀비 재배 허가 구역 목록

① 「앵속재배구역(罌粟栽培區域)」

도명	군명	면명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독도면, 지도면	
	양주군	미금면, 구리면	
	안성군	읍내면, 보개면	
	시흥군	영등포면	
	파주군	주내면, 임진면	
	장단군	군내면, 진남면, 장남면, 진동면	
	개성군	동면, 청교면, 남면, 서면, 중면	
충청북도	청주군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남일면, 옥산면, 오창면	
	진천군	진천면, 초평면	
	괴산군	증평면, 도안면	
	음성군	음성면, 원남면, 소이면	
	충주군	가금면, 신니면, 주덕면, 이류면	
전라북도	금산군	금산면, 금성면, 체월면, 부리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	장수면, 번암면, 계남면	
황해도	해주군	영동면, 서변면	
	연백군	연안면, 호남면, 목단면, 온천면, 운산면	
	금천군	서천면, 외류면	
	장연군	장연면, 신화면, 순택면	
	은율군	은율면	
	신천군	신천면, 초리면, 북부면	
	재령군	삼지강면, 상성면, 상류면, 하류면	
	서흥군	목감면	
	수안군	수안면, 대천면, 연암면	
	곡산군	곡산면, 동촌면, 서촌면, 떡미면	
	강원도	춘천군	동내면, 신북면
		인제군	인제면
통천군		통천면	
강릉군		강릉면, 구정면	
홍천군		두촌면, 내촌면	
평강군		목전면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區域」, 『朝鮮總督府官報』, 1919.08.02.

② 「앵속재배지정구역추가(罌粟栽培指定區域追加)」

도명	군명	면명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야로면, 묘산면, 합천면, 봉산면, 적중면
	거창군	남상면, 남하면, 거창면, 읍외면, 가북면, 가서면, 가동면, 마리면, 위천면
	함양군	서하면, 함양면, 지곡면, 수동면, 안의면
	산청군	생초면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指定區域追加」, 『朝鮮總督府官報』, 1920.02.02.

③ 「앵속재배구역지정중개정(罌粟栽培區域指定中改正)」

도명	군명	면명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면
함경남도	영흥군	요덕면, 횡천면, 고령면
	북천군	후창면
	단천군	수하면, 북두일면
	신흥군	월평면, 서고천면, 영고면, 상원천면, 하원천면, 동상면
	장진군	군내면, 상남면, 중남면, 구읍면, 신남면, 북면, 동하면
	풍산군	이인면, 웅이면, 안수면, 안산면, 천남면
	갑산군	진동면, 회린면, 동인면, 운흥면
	삼수군	삼남면, 별동면
	홍원군	용천면
함경북도	경성군	오촌면, 나남면, 주을온면, 주북면, 주남면
	명천군	상우북면
	성진군	학상면, 중면, 학동면, 학서면
	경흥군	웅기면
경기도	안성군	삭제
	장단군	삭제
충청북도		삭제
전라북도	무주군	삭제
	장수군	삭제
강원도	인제군	삭제
	김화군	김화면, 근동면, 금성면
경상남도	산청군	삭제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區域指定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1.01.28.

④ 「앵속재배구역지정의건중개정(罌粟栽培區域指定ノ件中改正)」

도명	군명	면명
함경북도	명천군	상우남면 아간면
	길주군	양사면, 장백면
	부령군	서상면
	무산군	어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區域指定ノ件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2.02.25.

⑤ 「앵속재배구역중개정(罌粟栽培區域中改正)」 : '도' 단위로 재배 구역 설정

도명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	---------------------------------------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區域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2.04.29.

⑥ 「앵속재배구역의건중개정(罌粟栽培區域ノ件中改正)」

도명	경기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황해도 삭제)
----	--

출전 : 朝鮮總督府, 「罌粟栽培區域ノ件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31.03.14.

<부록 2> 「앵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1917.03.31.)

	조항 본문
	조선총독부 황해도 경무부령 제1호 앵속재배취체규칙은 다음과 같이 통정(通定)함. 다이쇼 6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 황해도 경무부장 시오자와(鹽澤義夫)
제1조	유액채취를 목적으로 앵속을 재배하고자 한 자는 재배의 장소, 면적, 재배자의 원적(외국인은 그 국적)주소, 씨명을 갖춰 소할(所轄) 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장, 헌병분견소)를 경유하여 경무부장에 원출(願出)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유액을 채취하고자 할 때는 착수 3일 이전에 그 취지를 또 채취를 종료하고자 하는 3일 이내에 그 수량을 경찰서장에 원출해야 한다.
제3조	유액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인도 전 그 수량, 가격, 양수 목적을 갖춰 양수인과 연서의 상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	경찰서장은 앵속재배자에 대해 취체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본령 또는 본령에 기초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6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 시행 때 실제 앵속 재배를 하는 자는 본령 시행 때 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조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17.03.31.

<부록 3> 「앵속재배취체규칙(罌粟栽培取締規則)」(1918.06.05.)

	조항 본문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무부령 제2호 앵속재배취체규칙은 다음과 같이 통정함. 다이쇼 7년 6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무부장 시오자와
제1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약제사 또는 제약자로서 자신이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 2. 제약사 또는 제약자를 고용하여 제약하고자 하는 자
제2조	전조에 의해 앵속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원적(외국인은 그 국적)주소, 직업, 씨명, 재배 장소, 면적, 파종 종자량 및 유액 수확 예상 근량(斤量)을 갖춰 재배지 소할 경찰서장(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헌병분견소의 장에 해당하는 이하 동일)을 경유하여 경무부장에 원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해 허가받은 사항에 이동(異動)이 발생할 때는 3일 이내에 전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유액을 채취하고자 할 때는 착수 3일 전에 그 취지를 또 채취를 종료하려는 3일 이내에 그 근량을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조항 본문	
제4조	아편을 제조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근량을 3일 이내에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유액 채취 또는 아편제조 때 남은 찌꺼기를 처분함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재배자는 장부를 갖춰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앵속과종 월일 및 종자량 2. 재배 장소 및 면적 3. 유액채취 월일 및 근량
제7조	경찰관리는 유액채취, 저장 장소에 임검(臨檢)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경찰서장은 앵속재배자에 대해 취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경무부장은 재배자에게서 공익을 해치거나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본령 또는 본령에 기초한 명령을 위반해 만약 제7조의 임검, 검사를 거부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발포 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 시행 때 실제 앵속 재배 중인 자는 본년에 한해 본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령시행 일부터 3일 이내에 제2조 제1항을 신고한다. 다만 유액처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18.06.05.

<부록 4>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1919.06.15.)

조항 본문	
제1조	아편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전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앵속을 재배할 수 없다. 2.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 또는 관상을 위하여 앵속을 재배하는 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의 앵속재배 구역은 조선총독이 고시한다.
제4조	1. 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아편은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매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아편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교부한다. 다만, “모르핀” 함량이 소정의 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	1. 아편은 정부가 제약용품 및 의약품에 한하여 봉합하여 매하 또는 교부

조항 본문	
	한다. 2. 아편은 정부가 매하 또는 교부한 것이 아니면 매매·수수·소유 또는 소지할 수 없다.
제6조	1. 제약용 아편은 “모르핀” 기타 아편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제품의 제조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지정한 제약자에게 매하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하 받은 제약용 아편은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7조	1. 조선총독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리로 하여금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제약자의 제조장·점포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원료·제제품·기구·기계·건축물·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선총독은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자에게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제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1. 의약품 아편은 의약품 아편판매인에게 매하 한다. 2. 의약품 아편판매인은 약제사 및 약종상 중 상당하는 인원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지정한다.
제9조	1. 의사·의생·치과의사·수의·약제사 또는 제약자가 의약품 아편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관청의 증명을 받아 의약품 아편판매인에게 매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의약품 아편판매인이 판매용 아편을 판매목적 이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의약품 아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조선총독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의생·치과의사 또는 수의의 처방전이 없으면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	의약품 아편판매인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아편의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의약품 아편판매인은 정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의약품 아편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1. 의약품 아편판매인은 정부가 봉합한 의약품 아편의 용기를 개봉 또는 개장하거나 봉합을 파훼할 수 없다. 2. 의약품 아편판매인은 정부가 봉합한 의약품 아편으로 봉합을 무효로 한 것 또는 용기를 개장한 것을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	관청이나 관립병원 또는 학교에서 아편이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약자 또는 의약품 아편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아편연 또는 아편에 관하여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제약자 또는 의약품 아편판매인이 사망·폐업·영업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전조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때에는 조선총

조항 본문	
	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며,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제약자가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의 제조를 폐지한 때에도 같다.
제17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아편의 배상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모르핀”함량도 및 제약용 아편을 제약용 아편판매인에게 매하 하는 가격은 조선총독이 고시한다.
제18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편을 제조하거나 아편제조 목적으로 양속을 재배한 자 2)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아편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전항의 경우 범인에게 속하는 아편은 몰수하고 범인이 아편을 소비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범인이 아닌 자에게 속하는 아편은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제1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조의 양속재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양속을 재배한 자 2) 제2조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속을 재배한 자 3) 제4조 제1항의 기일까지 아편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9조 제2항, 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	전2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1912년 제령 제4호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징역에 처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출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부록 5> 「조선아편취체령시행규칙(朝鮮阿片取締令施行規則)」(1919.06.15.)

조항 본문	
제1조	아편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경무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귀비 재배지를 변경하거나 그 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본적·주소·성명·직업·생년월일 2. 양귀비 재배지의 지명 및 면적

조항 본문	
제2조	조선아편취체령 제2조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귀비 재배지의 부·면·정·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및 재배의 목적을 구비하여 경무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아편 제조인이 양귀비를 과종한 때에는 재배지의 부·면·정·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을 10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아편 제조인은 양귀비 재배지 1개소마다 정·동·리명, 지번, 면적 및 아편 제조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표목을 세워야 한다.
제5조	아편 제조인은 양귀비의 유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3일 전까지 채취착수의 시기, 아편의 제조를 끝낸 때에는 10일 내에 그 수량을 경찰서(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동 분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아편 제조인은 제조한 아편을 자물쇠의 설비가 있는 장소 또는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7조	아편 제조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아편을 망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선아편취체령 제4조의 납부기일은 경무부장이 고시한다.
제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편 제조인은 아편을 조선총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아편 제조인은 아편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품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경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부한 아편에는 그 중량 및 본인의 주소·성명을 명기한 목찰을 붙여야 한다.
제1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편 제조인이 폐업 또는 사망하거나 아편 제조의 허가를 취소당한 때에는 이미 제조한 아편은 1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자의 상속인, 상속인이 미정 또는 부재인 때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아편의 납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편 제조인 또는 조선아편취체령 제2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적·주소·성명을 변경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아편 제조인이 폐업한 때에는 10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사망의 신고는 호적법 또는 민적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하여야 한다.
제1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아편취체령 제6조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장의 위치

조항 본문	
	<p>2) 제조장의 구조 및 평수</p> <p>3)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의 종류, 1개년의 제조 예정 수량</p> <p>4) 주임기술자의 성명·이력</p> <p>2.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또는 주임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제13조	<p>제약용 아편 매하의 지정을 받은 제약자가 제약용 아편의 매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량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제14조	<p>1. 제약용 아편 매하의 지정을 받은 제약자는 장부를 구비하여 제약용 아편의 매수·용도 및 제조품의 매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제15조	<p>1. 제약용 아편 매하의 지정을 받은 제약자가 조선아편취체령 제16조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하여야 한다. 사망한 경우의 환매의 청구는 상속인, 상속인이 미정 또는 부재인 때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환매 가격은 조선총독이 정한다.</p>
제16조	<p>의약용 아편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무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제17조	<p>정부가 매하하는 의약용 아편의 용기는 제1호(5그램 함유)·제2호(25그램 함유) 및 제3호(450그램 함유) 3종으로 하고, 매 용기별로 정하는 정가를 부기하여 정부의 봉합지를 첩부한다.</p>
제18조	<p>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정부의 회계연도의 초부터 3월마다 매하를 받아야 하는 아편의 수량을 예정하고 용기의 종류·원수를 기재하여 조선총독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핍의 경우에는 임시 청구할 수 있다.</p>
제19조	<p>1. 조선아편취체령 제9조 제1항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용기의 종류·원수 및 용도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규정은 의약용 아편 판매인이 조선아편취체령 제9조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제20조	<p>1. 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의약용 아편을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를 받은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증명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제21조	<p>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점두에 의약용 아편 판매소라고 쓴 간판을 내걸어야 한다.</p>
제22조	<p>1. 의약용 아편 판매인은 장부를 구비하여 의약용 아편의 수불금과 매수인의 주소·성명 및 직업을 기재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조항 본문	
제23조	의약품 아편 판매인은 매년도의 의약품 아편 수불표를 작성하여 연도 경과 후 1월 내에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1. 의약품 아편 판매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경무부장은 그 주소·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약품 아편 판매인이 주소·성명을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사망한 때에도 같다.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의약품 아편 판매인이 조선아편취체령 제16조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	1. 관청 또는 관립의 병원 또는 학교가 아편을 요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 및 용도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아편의 가격은 정가를 부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1. 제1조 내지 제3조·제11조·제16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조선총독 또는 경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경찰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조 내지 제3조 또는 제11조의 경우에 양귀비 재배지가 2이상의 경찰서의 구역에 걸친 때에는 주재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거쳐야 한다. 2. 제12조·제13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방장관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7조	제12조 제2항·제14조·제20조 또는 제22조에 위반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조	제3조·제5조 내지 제7조에 위반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조	제4조·제11조·제21조 또는 제23조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1. 이 영은 조선아편취체령 시행일부부터 시행한다. 2. 조선아편취체령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부터 20일 내에 양귀비 재배지의 부·면·정·동·리명, 번지, 지목 및 면적을 구비하여 경무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조선아편취체령 부칙 제4항의 아편은 동령 시행일부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9조의 규정은 전항의 아편의 납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부록 6> 1936년 아편 사무 담당 당국

아편사무취급구분			
순번	취급사무	구분	적요(摘要)
1	아편 및 마약류에 관한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단, 13 및 16의 가격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외	경무국	전매국에 합의
2	아편 및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사항	경무국 및 도	
3	앵속재배지 및 재배 면적에 관한 사항	경무국 및 도	
4	앵속재배의 허가에 관한 사항	도	허가면적 및 과종면적은 군별로 매년 이를 전매국에 통지할 것
5	아편 및 모르핀의 연액소요 예상 결정	경무국	전매국에 합의
6	아편 제조 취급에 관한 사항	경무국 및 도	
7	재배자로부터 아편 수수 및 회송에 관한 사항	도	
8	모르핀	경무국 및 도	
9	의약용 아편 판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경무국 및 도	
10	아편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전매국	수납을 완료한 것은 군별 수납 무게를 경무국에 통지할 것
11	수납 아편의 모르핀 함량감정에 관한 사항	전매국	감정을 완료한 것은 모르핀 함량별 무게를 경무국에 통지할 것
12	아편 배상금 지불에 관한 사항	전매국	배상금은 직접 본인에 지불할 것
13	아편 배상금에 관한 사항	전매국	경무국에 합의
14	모르핀 매하에 관한 사항	전매국	매하 청구서는 모아서 소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경성 전매지국에 제출할 것. 판매인에 발송할 현품은 본인에 직송할 것. 매월의 상황은 경무국에 통보할 것
15	의약용 아편 매하에 관한 사항	전매국	

아편사무취급구분			
순번	취급사무	구분	적요(摘要)
16	모르핀 및 의약용 아편의 매하 가격 및 소매가에 관한 사항	전매국	경무국에 합의할 것
17	모르핀 및 의약용 아편의 제조에 관한 사항	전매국	경무국에 합의할 것
18	앵속유액 채취 및 제조 지도에 관한 사항	전매국	
19	매하 아편의 매려(買戾)에 관한 사항	전매국	매려(買戾) 청구서는 소할 경찰 서를 경유할 것
20	매하 모르핀, 헤로인의 매려에 관한 사항	전매국	매려 청구서는 소할 경찰서를 경유할 것
21	관청 및 관립의 병원학교에 대한 아편의 교부,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전매국	14,15 및 20의 사항과 함께 매 월 상황을 취합하여 경무국에 통지할 것
22	몰수 아편 및 마약류 인계에 관한 사항	전매국	
23	마약류 수이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경무국	

출전 :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 第3卷, 1936, 516~518쪽.

<Abstract>

The poppies planting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cultivating status of the poppies

Roh Seok-joo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The opium poppy is the raw material to produce opiates, and it is illegal to grow poppies in South Korea. The literature materials, however, indicate that they grew poppies in early Joseon mainly to secure medicinal stuff and for administration and enjoyment. It seems that people cultivated poppies at the individual level rather than under the initiative of the Joseon government. After the opium smoking culture was introduced in Joseon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y started to cultivate poppies to secure opium for smoking in the country. The Joseon government prohibited the act of cultivating poppies for fear that opiumism might spread around the nation. After Joseon had its sovereignty taken away by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gulated the act of cultivating poppies along with opium-related crimes for an efficient colonial rule. After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the demand for opiates skyrocketed at the European front, which led to the scarcity of opiates and their soaring prices. The Japanese Empire, which depended on the import of opiates for its needs, was keenly aware of self-supply for opiates, in which process colonized Joseon was designated to produce poppies as the raw material of opiates for its conditions proper to cultivate poppi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the "Rules for Poppy Cultivation and Supervision." In areas where these rules were announced, only those who got a permit from the police in the pharmaceutical business were allowed to grow poppies. That is, the goal of the rules was to ensure the stable supply of opium without any risk of opium outflow. Unlike the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owever, common people rather than practitioners in the pharmaceutical business began to grow poppies to earn economic benefits as the opium prices were higher than before WWI. The number of unlicensed poppy growers rose quickly due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ovisions and all kinds of rumors around poppy cultivation. Despite the police crackdown, common people did not shy away from the act of cultivating poppies. The prevalence of poppy cultivation those days reflected people's wish to

escape from the recession including rising prices due to the w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ventually had to supplement its old policy as poppy cultivation did not go in the way they intended.

On June 15, 1919, the "Act on Opium Supervision in Joseon" was annou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upplementing the old Rules for Poppy Cultivation and Supervision, the act offered detailed provisions about the conditions of a designated poppy cultivation area, qualification of a cultivation applicant, and payment methods for produced opium. On August 2 of the same year, "Areas of Poppy Cultivation" were announced with Gyeonggi, Chungcheongbuk, Jeollabuk, Hwanghae, and Gangwon Provinces designated as poppy cultivation areas. Since then, there were several changes to the list of designated poppy cultivation areas. In 1931, only Gyeonggi, Gangwon, and Hamgyeong Provinces were left as poppy cultivation areas.

There were several factors behind the restriction of poppy cultivation areas to the central and northern parts of colonized Joseon including the dropping opium prices after the end of WWI, lack of techniques to cultivate poppies and make opium, and crackdowns on opiates. In the southern parts of colonized Joseon where crops other than the opium poppy were allowed, the poppy cultivation lots were closed down. In the Hamgyeong Province where it was difficult to grow common crops, the authorities allowed the poor and slash-and-burn farmers to grow poppies for relief purposes. The province maintained its designation as a poppy cultivation area in colonized Joseon in the 1920s.

In the 1930s, the scale of poppy cultivation gradually expanded in colonized Joseon following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foundation of Manchukuo. The opium produced in colonized Joseon was exported to Taiwan and Kwantung Province as well as Manchukuo and used in the opium monopoly of these regions. In colonized Joseon, the area of poppy cultivation started to increase around the Hamgyeong Province that remained as a poppy cultivation area in the 1920s. In the province, the area of poppy cultivation was less than 1,000 Jeongbos in the 1920s and increased more than two times to exceed 2,000 Jeongbos by 1935. It was the same case with the opium storage volume, which was approximately 1,500kg at most in the 1920s and increased more than ten times by 1935, when the opium output of Hamgyeong Province was close to the entire opium output of colonized Joseon.

In 1937, the Japanese Empire made its full-blown invasion into the continent, waging the Sino-Japanese War. As the front expanded due to the war, the demand for opiates grew. The Japanese Empire secured a new territory in China through invasion, and it contained opiate addicts. The Japanese Empire monopolized opium against opiate addicts to control the outflow of opium and secure war expenditures. Against this backdrop outside, the number of poppy cultivation areas made a rapid increase along with their area in colonized Joseon. All the regions of colonized Joseon were designated as a poppy cultivation area by 1939 except for the

Chungcheongbuk and Pyeonganbuk Provinces. The opium produced in colonized Joseon was largely supplied to the front or exported to Taiwan, Kwantung Province and Manchukuo. Although the opium output in Joseon did not meet the expec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 unskilled labor force in poppy cultivation, poppy cultivation continued on until the Liberation.

The maintenance of poppy cultivation areas provided a background for such crimes as secret poppy cultivation and opium trafficking. The secret cultivation of poppies usually happened in forest zones, and the opium produced there was moved to Manchuria and China as well as colonized Joseon. The concerned crimes continued to happen despite the police round-up. It was very difficult to crack down on secret poppy cultivation areas hidden in forest zones for their characteristics. The fines could be offset by the enormous profit from opium trafficking, which ensured the continuous secret cultivation of popp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ppy cultivation polic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operate in the way that they intended. The opium storage volume did not meet the predic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e to the unskilled labor force in poppy cultivation and the lower opium prices after WWI. Poppy cultivation was allowed only in designated areas to prevent the outflow of opium, but the secret cultivation of poppies continued outside the surveillance of the police. The opium produced in secret poppy cultivation areas was leaked to the outside and resulted in opium addicts.

Keywords: poppies, poppies cultivation, cultivating status of the poppies, Rules for Poppies Cultivation and Supervision, Act on Opium Supervision in Joseon, monopoly, opiate, secret poppies cultivation
--